

碩士學位論文

中國의 經濟改革이후
價格制度改革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鄭喜淑

中國의 經濟改革이후
價格制度改革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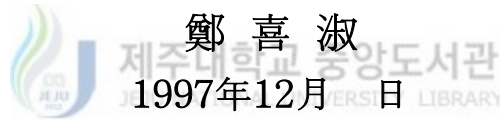
指導教授 崔元喆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鄭喜淑

1997年12月 日



鄭喜淑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認准함.

委員長_____

委員_____

委員_____

1997年12月 日

碩士學位論文

中國의 經濟改革이후
價格制度改革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崔 元 喆



濟州大學校 大學院
經 濟 學 科
鄭 喜 淑

1998.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中國은 1978년이래 市場經濟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經濟改革을 추진하여 왔다. 市場經濟 도입의 성과는 市場價格이 計劃價格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대체하느냐에 따라 決定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中國에 있어서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市場經濟 도입을 위주로 하여 추진된 經濟改革의 성과를 價格改革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中國은 지난 20년간 社會主義 計劃經濟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적 하에 실질적으로는 市場經濟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經濟改革을 추진하여 왔다. 經濟改革은 巨視經濟管理體制, 意思決定體制, 財政 및 金融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市場經濟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經濟改革은 먼저 中央의 計劃當局에 집중되어 있는 意思決定 권한의 분권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計劃經濟하에서는 中央에서 하달하는 指令性 命令에 의하여 經濟 전반이 운영되었다. 기업 단위에 대해서는 생산량, 품종, 품질, 원자재구입, 연료, 노동생산성, 利潤, 價格, 유동자금비율 등 기업활동 전반에 관련된 지령성 지표가 하달되었다. 그러나 經濟改革의 시작과 함께 中央에 집중되어 있던 각종 지령성 의사결정권한은 地方政府와 기업, 각종 基層經濟단위로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經濟管理體制的 改革은 과거 지령성 지표에 의하여 관리되던 經濟體制로부터 지도성 지표나 市場機構에 의하여 운영되는 經濟體制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¹⁾. 이에 따라 국가의 統一分配物資나 指令性計劃 分配物資는 준지도성 分配體制 내지 市場 中心 分配體制를 통해서 分配되기 시작하였다²⁾.

1) 여기에 상세한 國家指令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의 상품별 비중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V장 2절 「계획가격의 시장가격 진화성과 분석」을 참조.

中國의 經濟改革 추진은 급진적이고 전면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中國의 經濟改革은 1985년과 1987년, 1988년에는 매우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經濟改革을 광범위하게 추진한 이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그 폭과 범위를 축소하여 改革을 추진하는 方式의 점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企業改革을 비롯한 각종 經濟改革은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부분적인 실험을 거쳐 그 성과에 따라서 改革의 수위를 높여 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價格改革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초기 도입 단계, 1984년 10월부터 1988년 9월까지의 본격적인 價格改革 단계, 1988년 9월부터 1992년 4월까지의 價格改革 調整 단계, 1992년 이후 현재까지의 市場價格으로의 完成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價格改革도 각 부문의 經濟改革 추진정도에 따라 비슷한 폭과 깊이로 추진되었으며, 각 부문의 經濟改革과 價格改革은 상호 밀접한 보완 관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價格改革이 각 부문의 經濟改革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市場經濟의 주요기능이 市場의 需要供給에 의해 決定되는 價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市場經濟를 도입하여 計劃經濟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하는 經濟改革도 결과적으로는 市場價格이 計劃價格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의 과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價格改革이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얼마나 中心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企業改革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욱 분명해진다. 企業 經營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企業改革이 추진되었다³⁾. 그 결과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령

2) 統一分配 물자수는 비교적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8년 256종이었던 것이 1982년에는 30종으로 축소되었다. (當代中國, 1984, p.515)

성 命 命의 대부분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價格 決定 권한은 기업에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企業改革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이 생산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의 효율성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대한 효율성은 투입원료 및 생산제품에 대한 市場價格을 토대로 費用의 최소화와 利潤의 극대화를 통한 기업의 효율성 달성은 어려워지며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성이 누적된다. 따라서 價格改革은 각 부문의 經濟改革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2. 研究의 方法

본 논문은 經濟改革의 핵심이 되고 있는 價格改革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 社會主義 計劃經濟 하에서의 計劃價格이 지니는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둘째, 市場經濟의 도입 과정에 동원된 價格改革의 手段과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二重價格體制⁴⁾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셋째, 價格改革의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그

3)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하나의 특수한 中國식 改革으로서의 政府經營責任制, 稅金과 利潤을 분리함으로써 利潤추구 동기를 제고시키는 稅利分類制, 企業획득 利潤을 稅金의 형식으로 國家에 납부하고 남은 利潤을 企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企業의 利潤추구 동기를 제고시키고자 실시된 利改稅제도, 공장장이 企業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企業의 책임성을 높이고자한 企業指導體制改革, 企業에 과건되어 있는 당원이 企業의 生産 및 經營活動에 干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기분리조치, 企業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決定할 수 있도록 한 雇用制度改革, 企業자체적으로 利潤의 정도와 노동자의 生産성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임금제도의 改革 등, 企業과관련된 改革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企業改革의 추진으로 企業改革 이전에 國營企業을 직접 經營 管理하던 수많은 指標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馬凱, 「價格理論和實踐」 1993, p. 31-42) 참조.

4) 二重價格體制는 計劃價格인 國家 固定價格과 市場價格이 공존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計劃價格의 성격과 市場價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不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넷째, 價格改革과 부문별로 추진된 經濟改革과의 연관성은 무엇이며, 총론적으로 中國 社會主義 計劃經濟는 어느 정도로 市場經濟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등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價格改革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농산품과 工產品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에 대하여 분석한다. 농산품의 경우는 농산품 價格自由化가 中國 농업의 제반여건에 의하여 제약되어온 과정을 분석하고 價格自由化 추진의 성과가 안정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농산품 가격자유화와 價格補助金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價格補助金의 역할을 분석한다.

工產品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은 中國의 價格改革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計劃經濟 하에서의 工產品 價格決定 방식과 工產品 價格의 調整 過程, 공장가격의 주요 문제점 등을 計劃經濟의 유기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 다음은 80년대 중반까지 價格管理 方式의 개선 내용과 工產品 價格의 再調整 과정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

둘째, 生産財計劃과 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에 채택된 雙軌制⁵⁾의 역할과 문제점, 이의 解決過程을 분석하고 雙軌制의 생산재 價格改革에 대한 기여 내용을 평가한다. 또한 생산재 價格改革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재 價格改革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生産財의 가격상승과 市場 혼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채택된 上限價格制의

價格 등 價格改革 과정에 등장하는 각종 價格이 공존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生産財의 市場價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채택된 雙軌制도 二重價格制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5) 雙軌制란 생산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市場機構를 활용, 계획량 이상으로 초과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割增價格과 市場價格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써 二重價格制 내지 多重價格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참조.

주요 내용과 문제점, 工產品 計劃價格과 市場價格間的 격차 해소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工產品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셋째, 價格體制改革의 한계를 價格體系改革의 價格管理體制改革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政治經濟學에 토대를 두었던 計劃經濟와 신고전적인 경제논리로 설명되는 市場經濟가 中國의 價格改革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밝힌다. 동시에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성과를 상품별 三種價格⁶⁾의 결정 비중 변화추이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價格측면에서 中國의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어느 정도 市場經濟로 代替되었는가를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의 價格改革 분석은 中國에서 주로 분석되던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여기에 資本主義 국가에서 經濟 분석에 이용되던 概念들을 활용하여 中國의 價格改革이 지닌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經濟改革이 시작된 이래 價格改革에 대한 수많은 論議와 연구가 中國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는 價格改革의 중요성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中國內에서의 價格改革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인 제반 문제를 포괄하여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價格과 관련 있는 모든 부문에 걸쳐 價格改革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解決 方案이 논의되었다. 즉 價格改革의 목적과 方法, 價格體系改革⁷⁾, 價格管理體制改革⁸⁾, 工業

6) 상품별로는 農副食品, 消費財, 生産財로 구분하였으며 三種價格은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을 총칭하는 概念으로 사용한다.

7) 價格體系는 中國의 산업부문별, 동일 산업내 업종별 生産製品의 가격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中國 社會主義 計劃經濟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각 부문별로 책정된 가격 수준이 곧 바로 각 부문의 이윤과 분배의 몫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부문별 형평성의 유지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社會主義 國家가 이러한 가격비를 당연히 중시할 수 밖에 없다. 불합리한 가격비는 생산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투자의 비효율성 등이 극대화 되도록 만든다. 따라서 價格體系改革은 부문별 가격비와 이윤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문별 이윤율의 불평등성을 개선시키고 자원 절약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8) 價格管理體制改革은 國家固定價格 中心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價格管理體制

부문별 價格改革, 農産物 價格改革, 雙軌制, 주요 生産財 價格改革, 農工間 協商價格差 문제, 인플레이션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價格 論議에 포함된 모든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양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분석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中國의 價格改革이 전반 經濟改革에서 어떻게 市場經濟와 接近하는가를 통하여 中國의 經濟改革의 성과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中國의 價格改革에 대한 연구는 中國 國內外 학자들이 많이 소개했지만 韓國에서 中國의 價格改革 연구는 전무하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中國의 價格改革이 經濟改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된 바도 있겠지만 韓國內의 中國經濟 연구가 한국 기업의 中國市場 진출 등 韓國內 需要가 큰 주제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六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서술하고, II 장에서는 價格改革의 방법과 과제를 서술했다. III 장에서는 부문별 價格改革의 전개과정을 說明하고 改革이 지닌 意義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IV 장에서는 價格改革의 전환점인 雙軌制價格의 진행과정을 설명 분석하였다. V 장에서는 價格改革이 市場價格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관리체제개혁으로 전환된 이유를 분석함과 동시에 상품별 三種價格 결정비중추이 측면에서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中國의 經濟改革의 성공을 볼 수 있다. VI 장에서는 각 장별로 분석된 價格改革의 내용을 要約하여 結論적으로 整理하였다.

를 市場價格 위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計劃價格과 市場價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不同價格등도 價格管理體制改革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國家固定價格과 市場價格의 二種價格體制 유지는 價格管理體制改革의 추진으로 나타난 것이다.

II. 價格改革의 方法과 課題

1. 價格改革의 方法

經濟改革 추진과 함께 價格改革의 方法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 내용은 “放調結合”方法으로 요약되는데 “放”은 市場價格, 協商價格을 허용하는 價格開放을 의미하고, “調”는 政府가 價格을 調整 統制하는 價格調整을 의미한다.

그런데 價格改革論자들은 價格調整과 價格開放의 관계를 어떻게 위치 지워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⁹⁾. 대표적인 견해중의 하나는 價格調整을 위주로 하고(以調爲主), 價格開放을 보조적으로 다루어야 한다(先調後放)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價格改革을 단순히 국가가 價格을 調整하는 행위로 파악한다. 따라서 전문 기관이나 각종 機構를 통해 理論價格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國家價格體系중 주요 문제를 파악, 價格改革의 이상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거시적으로 價格體系중의 모순을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다른 대표적인 견해는 價格開放을 위주(以放爲主)로 하고 價格調整을 보조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논지는 價格調整을 위주로 하는 것이 市場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市場需要 변화에도 대응할 수 없는 弱點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價格開放을 위주로 할 경우 市場 메커니즘의 장점을 이용, 資源配分이나 競爭을 통한 생산증대와 경영의 合理化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견해는 앞의 두 견해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價格調整과 價格開放을 결합하되 둘 모두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價格

9) 王振之 外, 「中國價格改革的回顧與展望」, 北京: 中國物資出版社, 1988, pp. 23-24.

改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調放結合, 有調有放). 이는 市場의 無政府性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以放爲主”(개방위주)의 단점과 市場의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以調爲主”(조정위주)의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앞의 두 理論의 단점이 서로 결합, 극대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價格改革도 일반적으로 “放”과 “調”를 결합한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이후의 價格調整이 주를 이루었고, 1985년 이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는 價格開放이 價格改革의 核心내용이었다. 또 價格改革의 추진이 거의 중단된 1989년 하반기부터 1992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價格調整이 주된 흐름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는 市場價格을 위주로 하는 價格開放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價格調整이나 價格開放 모두 價格改革 方法의 中心 내용으로서 經濟狀況과 經濟改革의 속도나 진폭에 따라서 선택되어 왔다. 이러한 中國 價格改革의 실제적인 경험은 市場의 미비 등과 같은 中國 經濟의 제반 특성상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價格體制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는 산업부문별, 제품별로도 價格調整과 價格開放 중 어느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價格改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方法도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輕紡工業品の 價格은 “調”를 위주로 하며 “放”은 한가지 商品에만 허용하였고 重工業品에는 雙軌價格制를 채택, 지령성 計劃부분은 엄격하게 “調”政策 아래 국가計劃價格을 적용하고, 지도성계획 부분은 浮動價格을, 計劃外 商品에는 “放”의 政策아래 價格을 자유화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볼 때 市場 需給 상황의 불균형이 심각한 商品, 전국적으로 필요한 기초 商品들은 改革開放을 위주로 (“以放爲主”)하는 政策을 채택해 왔다. 生産手段의 價格改革에 있어서도 제품별로 改革方法을 달리 적용해

왔다. 생산수단을 대체로 에너지, 원자재 및 鑛産品을 포함한 1차 産品, 1차 産品을 투입해 만들어지는 中間産品, 一般機械, 電子製品 및 加工製品과 같은 최종 生産品으로 나누었을 때 1차 産品은 조절을 위주로 하는(“以調爲主”)政策을 적용, 國家計劃價格을 주로 실시하고, 國家指導價格과 市場價格을 보완적인 手段으로 허용하였으며, 中間 産品은 價格開放과 價格調整이 결합 되어야 한다는(“調放結合”)政策을 채택, 國家指導價格을 주로 실시하고 國家計劃價格과 市場價格을 보완수단으로, 최종 産品은 “以放爲主”政策을 취해 기업간에 協商價格과 市場價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國家計劃價格과 國家指導價格은 주로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價格改革 方法들을 바탕으로 하여 價格改革이 추진된 결과 현재 中國에 존재하는 각종 價格形態는 < 표 II-1 > 에서와 같다. 이러한 각종 價格形態의 존재는 분권화를 中心으로 하여 추진된 價格管理體制 改革과도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 표 II-1 > 各種 價格形態와 價格管理體制

價格形態	價格最終決定權		價格動向	計劃化 程度		
	國家計劃價格	管轄 機關		固定價格	行政命令	
國家指導價格	經營單位	無規制	變動價格	計劃價格	協議價格	行政指導
市場價格		無規制	自由價格		計劃外價格	競爭價格

資料: 楊魯, “國家指導價格廳是主要價格形式” 「價格理論和實踐」1986.

6, p3.

2. 價格改革의 課題

일반적으로 中國에서 인식되고 있는 價格改革의 課題는 각종 商品의 價格을 價値의 转化형태로서 그것의 實際價値와 일치되도록 만드는 것과 商品價格이 市場의 수급상황을 충분히 反映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러한 價格改革 課題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價格體系,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比價體系를 조정하여 각 生産부문으로 하여금 서로 동일한 利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比價體系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을 때에는 각 生産部門이나 生産기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利潤과 손실이 價格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價値 이상으로 높게 價格이 책정되어 있는 제품을 生産하는 기업은 生産要素 투입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과잉 투자하게 되며, 반대인 기업은 적정규모 이하로 과소 투자하게 되어 社會적으로 제품수요량 이상으로 과잉 生産되거나 그 이하로 과소 生産됨으로써 生産의 비능률성이 만연된다. 뿐만 아니라 國家計劃 부문에 있어서 比價體系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生産製品의 市場需要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生産에 임하는 등 경영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날 소지가 크다. 또한 기업의 損益計算이나 경영성과의 평가, 그리고 적정의 유보 수준의 決定도 어렵기 때문에 각 부문간, 기업간 이익이 합리적으로 分配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勞動 生産성이 떨어져서 社會적으로 필요한 生産部門에서의 공급부족이 만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價格에 市場의 수급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 기업이나 부문이 대체적으로 같은 수준의 평가 利潤을 획득할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상태가 곧 市場의 需給狀況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平均利潤率은 社會主義 計劃價格에 근거한 각종 利潤率을 의미한다. 價格改革이 추진되면서 生産價格의 資金 利潤率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따라서 價格改革 목표중의 하나는 市場의 수급상황이 제품생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價格을 책정하는 것이다. 價格機構는 市場메커니즘의 核心이며 합리적 價格은 市場메커니즘의 수급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보인 것이다. 價格改革을 통해 각 商品의 價格이 生産條件, 勞動生産性 및 교환조건의 변화를 반영하게 될 때, 즉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나타난 市場需給 狀況의 변화를 반영하게 될 때 그 역할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價格에 市場의 수급상황이나 장기적인 추세가 반영, 조정되지 않고 政府에 의한 任意적인 物價凍結 등이 이루어진다면 物價의 乖行적 변화나 生産 및 流通部門에서의 비능률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價値를 기초로 하여 市場需給 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價格을 합리적으로 調整해야 한다는 것이다. 價格改革 課題 중의 하나는 각 商品의 價格이 그 商品의 價値와 市場需給 狀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서로 모순을 일으킬 때에는 조세제도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¹⁰⁾. 이것의 한 예로 각 기업이나 부문에 있어서 利潤은 같게 하고 세금을 달리하는 方法을 들 수 있다. (< 표 II-2 > 참조). 이처럼 조세 등을 통해 生産수단 부문에서 價格改革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한편으로 價格이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 각 부문이 서로 동일한 수준의 利潤率을 획득할 수 있게 책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주 경영 균등한 生産조건 확보에 필요한 經濟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價格이 市場需給 狀況이나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10)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것이다. 市場機構 하에서는 기업이 生産極大化와 利潤極大化 등의 목표 아래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 國家나 政府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유지해야 할 경우 政府의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개입은 필수적이다.

< 표 II-2 > 주요 工業部門의 利潤率과 稅金의 關係

	利潤率(%)	稅(%)	工場價(元/噸)
石, 炭	10	-	40
가 솔 린	10	50	700
鋼 材	10	20	800
化學肥料	10	5	300

자료: 王振之 外, “深化價格改革10个理論問題綜述” 1988, p32

3. 價格體系改革의 必要性和 當면문제

中國의 經濟학자들은 합리적인 價格體系를 형성하는 것이 社會主義 經濟體制改革의 核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經濟改革 이전에는 商品貨幣 關係가 철저하게 배제됨으로써 價格 그 자체의 역할이 평가절하 되었지만 새로운 社會主義 經濟 모델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經濟改革 아래서 社會主義 經濟는 일종의 計劃적 商品經濟와 여기서 더욱 진전된 社會主義 市場經濟로 파악됨으로써 이러한 價格의 의미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價格이 經濟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價格體系가 합리적으로 構成되어야 資源의 효율적 배분과 産業構造의 합리적인 調整을 이룩할 수 있다. 價格改革의 주요 관건이 價格體系改革에 달려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하고 여기에 價格改革의 中心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價格體系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比價體系와 差價 體系가 社會主義 計劃經濟 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比價體系는 동일시장, 동일시간 내에 각종 商品 價格間의 比例關係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比價體系가 모든 價格體系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價格

體系를 형성시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합리적인 比價體系를 구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 단계에 있어서 國民經濟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比價體系는 농산품간 比價體系, 공산품간 比價體系, 농공산품간 比價體系이다. 여기서 工產品間 比價體系란 동일시장, 동일시기에 각종 工產品 價格間의 比例關係로서, 예를 들면 연료나 原材料와 加工產品間의 比價, 原料商品間의 比價, 대치관계에 있는 商品間의 比價, 機械產品과 手工業產品間의 比價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합리적인 比價體系 아래에서만 각 産業部門과 개별 생산기업의 利潤과 손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과잉생산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은 생산을 줄이도록 만들어 주며, 과소 생산 상태이면서 利潤이 큰 기업에게는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생산제품의 市場需要도 정확하게 고려하여 생산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게 해 준다.

이처럼 합리적인 比價體系는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農業, 工業, 建築業, 運輸業, 서비스업 등 모두 比價體系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리적인 比價體系는 제한된 생산자원을 이들 부문에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든다. 따라서 합리적 比價體系는 각 부분이 균형적으로 經濟發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합리적 比價體系는 計劃經濟의 巨視經濟政策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합리적 比價體系는 巨視經濟政策 운영의 必要條件으로서 物價安定과 같은 巨視經濟 현안을 다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行政手段 등의 強制性을 통해 단기적으로 物價를 안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比價體系가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物價安定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比價體系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업에게 공평한 競爭條件을 부여해 주게 되며 국가 또한 財政, 金融政策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價格은 經濟活動을 중

합적으로 나타내는 총체적 지표로서 比價體系가 합리적으로 되어야만 經濟活動 전반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經濟운영과 政策 지침을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합리적 比價體系는 각 부문간, 기업간 利益을 합리적으로 分配될 수 있도록 만든다. 計劃經濟의 조건 아래서 比價體系는 기업의 損益計算이나 經營성과의 평가, 그리고 적정 이익 유보 수준의 측정에 필수적이며 市場메커니즘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기업의 이익 分配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넷째, 합리적 比價體系는 價格改革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며 나아가 價格改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比價體系를 고려해 볼 때 中國이 지닌 價格體系의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食糧 등 農產品의 收買價格과 소매가격의 차가 너무 커서 국가의 財政負擔을 가중시키고 생산 유통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둘째, 農工產品 價格間에 協商 價格 차이가 존재하며 농산품 사이에도 比價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에너지, 원재료 가격은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加工 產品의 價格은 매우 높게 算定되어 있어서 產業構造調整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이나 생산성, 나아가 계획생산 목표달성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中國의 에너지 소비량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石炭 產業의 경우를 보면 1950년대에는 톤당 석탄의 平均生産費用이 약 9원, 價格은 11원 남짓하였다. 그러나 石炭工業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기술장비도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상승, 감가상각비 및 임금 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석탄의 생산비용이 점차적으로 상승되어 왔으며 이는 생산기업의 赤字要因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78년에는 국가가 統一 分配하는 석

탄의 매 톤당 평균 생산비용은 16.70원에 이르렀고 이때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價格은 16.15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생산기업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포함할 경우 대체적으로 원탄 1톤을 생산할 때마다 1.84원의 손실을 보는 상태가 되었다.

1983년에도 全國 統一 分配 원탄의 톤당 평균 생산비용은 22.33원인데 반하여 평균 소매가격은 22.01원으로 여전히 세금을 공제할 경우 적자 경영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 표 II-3 > 참조). 그 결과 1983년에는 전국 원탄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통일지도 탄광의 65.5%가 적자 경영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으며 同産業 部門의 국가 財政 補助金 의존도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업부문에서의 불합리한 價格體系(공업부문간의 비가구조)는 각 部門의 資金利潤率을 통해서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표 II-3 > 원탄 1톤당 공정가격과 평균 生産費用

단위:원

	1950	1961	1978	1983
공정 가격	11		16.15	22.01
평균 비용	9	14	16.70	22.33

자료: 戴園晨, [中國價格問題探索], 上海人民出版社, 1986, p167.

넷째, 交通運輸, 公共事業 및 사회간접자본 영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價格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利潤 수준이 매우 낮아서 동 部門 기업들은 補助金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Ⅲ. 商品別 價格改革의 展開

1. 價格改革의 方向 전환과 의의

價格體系改革은 부분別 利潤率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상호간 공정한 競爭 조건을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價格體系改革은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어느 정도 전제한 상태에서의 價格改革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計劃經濟가 유지된다는 것은 生産기업에게 손익계산이나 경영성과의 평가, 그리고 적정 이익유보 수준을 決定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部分別 價格體系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生産부문이나 生産기업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이 가격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部分別 利潤分配가 불공정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떤 부문은 노동생산성이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生産부문에서의 공급부족이 만연되며 필요한 기술진보나 설비개조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生産要素 투입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과잉 투자하게 되며 그 반대인 기업은 적정규모 이하로 과소 투자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제품수요량보다 過剩生産 되거나 過少 生産됨으로써 生産의 비 능률이 만연하게 될 가능성 높다.

이러한 현상의 출현을 막고 사회적 수요에 따르는 적절한 공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部分別 價格體系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市場經濟에서는 기업의 利潤이나 價格은 모두 기업이 市場의 수요공급 조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決定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價格體系가 합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필요 없어진다. 더구나 政府가 나서서 市場機構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利潤率이나 價格을 인위적으로 調整할 필요는 없다. 따라

서 價格體系改革을 강조하고 이를 중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社會主義적인 經濟운영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中國은 經濟改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계속해서 社會主義 經濟를 기본 틀로 해서 價格改革을 추진해왔다. 價格體制改革을 8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價格改革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價格體系改革이 價格改革과 관련된 논문 속에서 價格改革의 中心내용으로 다루어진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이처럼 價格體系改革이 社會主義 計劃經濟 영역 안에서 추진된 것은 價格改革이 지니는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價格體系와 관련된 核心理論의 내용들 모두 완화시킨다는 목적 아래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價格體系改革은 근본적으로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벗어나기 위한 價格改革의 일종은 아니다. 오히려 社會主義 計劃經濟 하에서 발생되어 왔던 價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통로로 논의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의 위에서 실제적으로 中央計劃당국 차원에서 價格體系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어 왔다. 이는 이미 80년대 초의 中央計劃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실시되어 온 價格調整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후 價格體系改革을 위해 더 큰 폭의 價格調整이 농산품과 주요 工產品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價格調整은 한편으로는 市場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된 가격수준과 계획당국에 의하여 책정된 가격수준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져 온 측면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價格體系的 왜곡으로 인한 社會主義 計劃經濟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價格體系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추진된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미 中國의 投入產出表를 이용하여 각종 理論價格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것처럼 價格體系改革의 성과는 價格體系改革이 中國의 價格改革에서 중시된 만큼, 혹은 價格體系改革을 위해 추진되어 온 價格調整의 폭 만

کم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이는 價格體系를 改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政府의 價格調整 폭 이상으로 雙軌制나 不同價格 등 각종 價格改革의 추진으로 인하여 나타난 市場價格 등이 각 部門의 產品價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政府가 計劃적으로 에너지 및 原料 產業 분야의 製品價格을 인상시키고 加工產業 製品 價格을 인하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產業 部門의 資金利潤率이 더욱 감소되었거나 公 營部門별 比價體系的 불합리성이 지속된 것은 多重價格制하에서 기업들이 計劃外로 生産하여 보다 많은 이익이 가능해지자 투자수익이 높은 加工分 業 產業 쪽으로 투자를 집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計劃外로 生産된 加工產品 價格상승이 전반적으로 기초분야 제품 價格 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中央計劃當局의 의도와는 달리 市場의 수급불균형이 큰 部門의 경우 市場價格이 中央당국의 價格調整 폭 이상으로 產品價格 수 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價格體系改革이 의도한 價格調整의 효과를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價格體系改革의 추진 정도에 비하여 그 성과가 크지 않다는 증거는 計劃 價格 책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 部門별 國營企業에 대한 資金利潤率 수 준이나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래에 다루어질 농공상품 가격개혁의 진개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는 中國의 價格改 革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中國의 價格改革에 대한 논의는 價格體系改革으 로부터 價格管理體制改革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價格改 革과 관련된 주요 논쟁과 價格改革을 다루어 온 주요 학자들의 統一收買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價格改革의 中心이 價格體系改革으로부터 價格管理體制改革으 로 옮겨간 것은 노동가치론에 근거한 經濟體制가 效用價值와 限界價格에 기초하는 經濟體制로 이행해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0년대 주요 논의의 核心은 80년대 후반에 價格改革의 中心에 자리잡고

있었던 雙軌制와 市場價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價格管理體制改革에 대한 것이었다. 價格改革의 추진 방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價格體系改革의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다른 이유는 雙軌制의 실시 등으로 인해 計劃價格이 市場價格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과거 동일 商品의 計劃價格과 市場價格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하에서는 市場機構를 中心으로 하는 價格管理體制改革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雙軌制 등의 실시 과정에서 計劃價格이 市場價格 수준에 상당히 접근함으로써 市場價格을 위주로 하는 價格管理體制改革을 추진하더라도 經濟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經濟改革의 추진 수준을 고려해 볼 때 市場機構를 위주로 하는 價格改革을 주장할 수 있는 經濟적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市場機構 도입을 中心으로 하는 價格改革은 社會主義가 근본적으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부문에서 추진되어 온 經濟改革의 성과가 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市場價格의 도입이 필요해짐에 따라 市場價格을 核心으로 하는 價格管理體制改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80년대의 價格改革 추진 결과 市場經濟가 광범위하게 자리잡음으로써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문별 平均利潤率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價格體系改革은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2. 農產品 價格改革의 展開

가. 計劃經濟 하에서의 食糧收買方式과 收買價格

1978년 改革開放이 실시되기 이전의 農產物 管理體制는 統一收買와 統一分配¹¹⁾ 기본으로 하였다¹²⁾. 생산되는 農產物에 대해 統一收買를 실시하

였기 때문에 農産物의 전 유통과정은 국가의 지령성 명령하에 관련 商業機構가 담당하였다. 統一收買價格은 市場價格보다 약 20--30%정도 낮은 價格이었다¹³⁾.

동시에 計劃當國은 食糧 消費者들에게 統一 分配를 실시하였다. 통일배급은 飲食業이나 副食品業, 과자제조업 등의 영업용과 일반 주민의 주식용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초기의 統一配給價格은 統一收買 價格 보다 5-15%정도 높은 價格이었다¹⁴⁾.

이후 中國은 1978년까지 統一收買, 統一分配를 기초로 하면서 食糧의 수급 사정과 生産狀況, 國家財政支出 정도에 따라서 超過收買, 自由販賣 등의 방법을 보충하여 실시하였다. 따라서 농산물을 둘러싼 市場價格은 항상 형성되고 있었다. 물론 자유판매가 가능한 농촌의 自由市場은 대약진운동이 시작되던 1958년 가을부터 폐쇄되었다가 지방의 반발과 식량생산의 문제 발생으로 1959년에 다시 개방되었으며 이후 다시 文化大革命을 거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동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農産物 자유거래 市場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고 있었다.

식량의 統一收買價格은 市場價格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고정된 뉴메네르로 취급되면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¹⁵⁾. 1958년과 1960년 사이에 統一收買價格이 부분적으로 두 차례 인상되었는데 이는 지역간 價格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적용된 조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56년부터 1960년까지

11) 中國에서는 '統購統銷'라는 개념으로 통칭된다.

12) 中國은 '통일수매, 계획배급'제도를 식량에 대하여 1953년, 면화는 1954년, 돼지 등의 主要 부식품은 1955년, 기타 主要 農産物에 대해서는 1956년과 1957년에 걸쳐서 도입하였다. (當代中國圖書編輯委員會, 當代中國的經濟管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p.56-63).

13) 中國은 計劃經濟를 수립하던 초기에 市場價格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식량이 존재하였다. 즉 통일 수매 이상으로 生産된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市場에서 거래할 수 있다.

14) 同價格차이는 統一收買價格에 輸送費, 租稅, 國家商業 부문에서 설정하는 일정 정도 利潤을 추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15) 식량의 收買價格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고려된 것은 中國 農産物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면화의 收買價格과의 비례관계였다.

5년동안 식량의 전국 평균 통일수매가격은 8% 인상 조정되었을 뿐이다¹⁶⁾. 統一收買價格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제고된 것은 1961년에서 1966년까지의 6년 동안이었다. 1961년에 들어오면서 計劃當國은 쌀(米), 옥수수(玉米), 밀(面粉) 등 주요 식량작물의 統一收買를 전국 평균 25.3% 인상 調整하였다. 1966년에도 동 식량작물의 統一收買가 전국 평균 17.1%로 인상 調整되었다¹⁷⁾. 이러한 統一收買의 인상 調整은 文化大革命기간에 들어가면서 동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1972년과 1973년의 미미한 價格調整을 제외하고는 1967년부터 1976년까지 물가안정과 인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일체의 統一收買의 인상이 동결되었다. 즉 1966년의 食糧收買價格 引上調整 이후 거의 10년 동안 同 價格은 고정되었다.

물론 中國의 計劃當國은 統一收買의 동결이나 매우 적은 폭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농민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超過收買에 대해서 價格服務 政策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超過收買는 統一 收買 量과는 달리 작황을 고려하여 매년 決定되었다. 統一收買 이상으로 추가되는 割增價格은 1960년 10%, 1965년 12%, 1966년 30%, 1971년 35%, 1979년 50%로 점차 인상되어 왔다¹⁸⁾.

統一配給價格도 1963년, 1965년, 1966년 세 차례에 걸쳐서 價格調整이 이루어졌다¹⁹⁾. 同 價格調整의 주요 목적은 統一收買와 統一配給價格의 역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統一分配價格의 인상은 價格補助의 필요성을 야기 시켰으며 價格補助는 一定 分の 임금인상 효과를 나타내었다²⁰⁾. 이 때부터 價格補助金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政府支出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²¹⁾.

16) [當代 中國의食糧工作], 1988, p.131.

17) [當代 中國의 食糧工作], 1988, p. 131.

18) [當代 中國의 食糧工作], 1988, p.132.

19) 統一分配價格은 1957년에 비해 1965년에 9.6% 인상되었다. [當代 中國의 食糧工作] 1988, p.131-132)

20) 일반적으로 價格補助는 1965년부터 도시노동자를 中心으로 실시되었다.

21) 政府의 財政支出에서 食糧價格에 대한 補助金은 1965년에 5% 수준이었으나 1980년에는 10%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자세한 內容은 본문 p23 價格補助金

나. 農產品 價格自由化의 추진과 再調整

i) 食糧收買方式의 轉換과 收買價格 調整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中國의 食糧유통 방식은 통일수매와 통일분배, 초과수매, 협의수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文化大革命의 일정 시기에는 통일수매와 통일분배만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시기에는 다양한 거래 형태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改革開放이 시작되기 전에는 거래방식의 다양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統一收買, 統一分配 이외의 형태로 거래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經濟改革이 시작되면서 同 比重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농민의 입장에서는 價格이 낮은 통일수매 방식보다는 價格이 월등히 높은 초과수매나 협의수매 거래 방식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經濟改革이 시작되면서 統一收買價格은 1979년에 20% 인상되었으나 이는 과거 收買價格의 凍結로 인한 농업경영 수지의 악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데 따른 것으로서 超過收買 價格이나 協議收買價格과의 차이를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統一收買의 인상폭에 비해 초과수매에 대한 割增價格은 1979년에 이전의 30%에서 50%로 더욱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대상 품목도 食糧 및 食용유뿐만 아니라 면화, 담배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었다.

協議收買도 더욱 확대되었다. 協議 收買價格은 市場價格보다는 낮았으나 超過收買價格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決定되었다. 협의수매는 3類 農產物과 統一收買이후의 1.2類 農산물 잔여 量을 대상으로 하였다. 협의수매가 차지 하던 비중은 1978년 2.6%에서 1979년 8.3%로 높아졌으며 동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1985년 36% 1986년에는 52%까지 제고되었다.

自由市場 거래도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1978년의 党大會 決意를 통해 生産地區 내에서 통일수매에 공급하고 남은 잉여 분에 대해서 自由市場에 생산자 재량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었다²²⁾. 일

관련 설명 참조.

반적으로 市場價格은 統一收買 보다 30-50%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²³⁾이처럼 협의수매, 초과수매²⁴⁾, 市場에서의 판매가 허용되면서 統一收買 量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표 III-1> 참조).

또한 식량의 價格도 統一收買 보다는 여타의 수매방식을 통한 價格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민들은 통일수매에 따른 의무공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方法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통일수매 달성 량은 목표 양에 비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었다. 즉 달성 량은 1979년 90%, 1980년 81%, 1981년 80%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또한 통일수매의 계획치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짐과 동시에 기타 방식을 통한 수매량이 많아지면서 식량의 수매비중은 수매방식별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즉 統一收買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진 반면 協議收買나 超過收買價格 비중은 급격히 제고되었다. 이처럼 통일수매에 낮은 價格을 적용하고 超過收買에 割增價格을 지불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統一收買價格과 超過收買價格을 일정 比率로 적용하여 수매하는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즉 식량에 대하여 統一收買價格을 30%, 超過收買價格을 70% 반영하는 방식이 최초로 채택되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中國의 농산물 價格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첫째, 統一收買 방식의 목표치 達成率이 계속해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同 比重도 급격히 낮아짐으로써 同 方式에 의한 政府의 農產物 政策 운영에 한계가 나타났다. 둘째, 통일수매나 초과수매 모두

22) 1978년 12월의 당11기 3중전회에서 “家庭副業이나 自耕地에서 경작한 농산물의 自由市場 거래는 사회주의 經濟와 보완성을 갖는 것으로서 生産者의 자유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23) 王振之, 喬榮章, 1988, 「中國價格改革的回顧和展望」 p.77.

24) 超過收買은 政府 당국의 통일수매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통일수매가격 보다 높은 價格으로(割增價格)生産여부에 대해 國家가 다시 수매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 그 결과 초과구매(超購-지역에 따라서는 增購, 超購등 할증 초과수매도 존재하였음, 협의수매 등 다양한 제도가 공존하게 되었다.)

25) 이러한 방식은 간접적으로 超過 收買價格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當代中國의食糧工作, 1988, p, 180)

< 표 III-1 > 농산물 收買價格別 수매비중 추이

단위: 억원, %

	통일수매 가격	초과수매 가격	협 의 가 격	시장가격	합 계
1978	472.4 (84.7)	44.2 (7.9)	10.2 (1.8)	31.1 (5.6)	557.9 (100.0)
1979	511.7 (71.7)	119.4 (16.7)	35.0 (4.9)	47.5 (6.7)	713.6 (100.0)
1980	542.2 (64.4)	151.0 (17.9)	80.0 (9.5)	69.0 (8.2)	842.2 (100.0)
1981	555.6 (58.2)	200.0 (20.9)	110.0 (11.5)	89.4 (9.4)	955.0 (100.0)
1982	622.2 (57.5)	225.0 (20.8)	125.0 (11.5)	110.8 (10.2)	1083.0 (100.0)
1983	607.0 (48.0)	355.0 (28.1)	170.0 (13.4)	133.0 (10.5)	1265.0 (100.0)
1984	487.8 (33.9)	483.9 (33.6)	207.0 (14.4)	261.3 (18.1)	1440.0 (100.0)

자료: 王振之, 喬榮章, 1988, 「中國價格改革的回顧與展望」p, 94.

광의 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 의한 계획적 농산물 수매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政府의 財政壓迫 要因으로 하였는데 價格 補助金의 급증으로 財政에 대한 압박 정도가 갈수록 커졌다. 셋째, 초과수매, 협상수매, 시장판매 등의 허용과 인민공사의 해체를 통한 개인의 생산의욕 자극은 농산물의 過剩生産을 발생시켜 식량의 판매 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넷째, 국가 배급 량에 비해 초과생산으로 인한 국가 수매 량은 더욱 많아짐으로써 식량저장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1985년에 들어와서는 식량, 면화 등은 統一收買制와 超過收買制를 폐지하고 관련 상업기관과 농민간에 사전에 매매계약을 맺어서 거래하는 예약수매제로 전환되었다²⁶⁾. 이는 政府의 財政負擔을 감소시키고 농민들에게는 생산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동 政策에 따라 中國 計劃當局은 1984년 1억톤에 비해 25% 정도 감소한 7,500만 톤을 예약 수매 량으로 決定하였는데, 이는 수매량을 축소하여 財政負擔을 완화시키자고 함이었다²⁷⁾. 예약 수매 제에 적용되는 收買價格은 이전의 統一收買30%, 超過收買價格 70%를 고려한 수준에서 決定되었다²⁸⁾. 예약수매 이외의 식량은 생산농민의 재량으로 市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식량의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市場價格이 이전의 統一收買價格 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가가 統一收買價格 수준에서 수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市場에서의 食糧價格이 統一收買價格을 하회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다. 오히려 식량사정의 갑작스런 악화로 市場에서의 食糧價格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²⁹⁾. 식량수급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市場價格이 폭등하자 예약수매에 의한 국가의 수매량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농민들은 생산량을 가능하면 시장에서 판매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되자 地方政府 및 수매기관은 自由市場을 강제적으로 폐쇄하거나 行政命令이나 각종 수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식량을 수매하는 方法을 사용하였다³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 예약수매제도

26) 예약 수매 제는 國家農業 관련 기관과 농민간에 과중 전에 수매량 및 품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확 이후에 동 계약에 따라서 수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中共 中央 1号 文件 (1985년1월1일)은 통일수매와 초과수매를 폐지하고 새로운 예약수매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를 발표하였다.

27) 池上章英, “農産物流通と農産物價格”, 「1985年の中國農業」 1986, p.78

28)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된 경우도 많았다. 이는 이전에 통일수매와 초과수매를 적용한 價格이 지방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거 棉花에 대해 남쪽지방에서는 統一收買와 超過收買價格을 각각 60% 및 80%로 적용하였다. 이 경우 지방별로 豫約收買價格 比率 또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29) 식량의 價格지수는 1978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86년 91.4, 1987년 107.9, 1988년 134.0, 1989년 183.0, 1990년 149.0으로 1987년부터는 市場의 食糧價格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8년과 1989년에는 폭등 추세를 보여주었다. ([中國物價統計年鑑], 1990년)

30) 이러한 조치로 인해 수매기관과 농민 사이의 긴장관계는 매우 심각하였으며 농민은 예약 수매량의 제공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부하는 등 행정적 命令에

는 초기부터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예약수매제의 목적과 方法이 변질되어 통일수매시 보다 더욱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예약수매 이외의 식량에 대해서도 원래는 市場價格 수준에서 協議價格으로 수매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市場價格에 훨씬 못 미치는 價格으로 반강제적으로 협의수매를 실시하였다.

사회 전체적으로 물가 폭등이 발생한 1988년에는 식량의 市場價格도 동일하게 폭등하여 市場에서의 쌀(米)의 유통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國務院은 면화와 쌀에 대한 통지³¹⁾를 발표하고 쌀과 면화에 대한 국가의 價格管理 강화를 선언하였다. 물가안정과 市場秩序 회복을 위해 中央의 計劃管理를 강화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는 식량의 국가관리를 더욱 강화시키고³²⁾ 1990년에 들어와서는 예약 수매 제를 國家收買制로 명칭도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豫約 收買制는 統一 收買制와 거의 유사한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1985년의 수매제도 전환을 분기점으로 하여 볼 때 80년대 후반의 市場을 中心으로 한 농산물의 價格改革은 市場價格의 폭등 流通市場의 마비와 혼란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市場價格 決定 비중도 1980년대 전반과 비교해볼 때 크게 변화되지 못했다. 農副產品에 대한 國家指導 價格의 비중은 1985년 23% 수준에서 1990년 23.4%로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결국 計劃部門을 市場部門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서의 國家指導價格의 決定비중이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國家固定價格 部門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ii) 副食品 價格의 自由化와 再調整

1985년에는 副食品 價格의 자유화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돼지고기(豬肉),

의한 수매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31) 國務院은 1988년 8월과 9월에 연이어 1988년 棉花收買와 棉花市場管理 강화에 관한 通知와 食糧管理의 강화와 食糧市場 안정에 관한 決定을 발표하였다.

32) 中央의 食糧價格 管理 강화에 따라 농부산품의 市場價格 決定 비중은 1988년의 57% 수준에서 1989년에는 4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소고기(牛肉), 닭고기(雞肉), 양고기(羊肉) 등의 각종 肉類와 加工食品, 野菜, 水果(과일) 등의 副食品 價格에 대해 自由 變動制가 실시되었다³³⁾. 이는 동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江蘇, 陝西, 甘肅, 新疆 등의 省에서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여 7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北京市에도 같은 해 5월부터 副食品 價格의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肉類의 경우 배급표에 의한 정량배급제가 폐지되고 消費者價格이 자유화되었으며 돼지고기의 유통과정에 國營食品會社 이외에 각종 商業企業과 개체상인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채소의 할당수매제도 폐지되고 국가 集團, 個人에 의한 다양한 판매루트가 생겨났으며 생산농민에게는 생산과 판매에 대한 自主權이 부여되었다.

副食品 價格自由化의 주요 목적은 副食品 價格決定에 市場機構를 도입함으로써 副食品의 供給量과 質을 개선시키자고 하는 것이었다. 과거 배급제에 따른 固定價格 하에서는 價格은 안정되었지만 供給되는 副食品의 量은 부족했으며 質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副食品 價格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정수준의 價格上昇이 발생될 가능성은 높으나³⁴⁾ 副食品의 질 향상, 공급품의 다양화, 수량의 증가, 운송시간의 단축, 서비스의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副食品 價格 자유화의 또 다른 목적은 생산자 價格이 消費者價格 보다 높음으로써 발생하는 商業企業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價格補助金 支出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副食品 價格의 자유화도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 價格自由化가 의도한 제품공급량의 증가나 질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價格이 폭등하는 副食品 價格이 소득 수준의 증가 속도 이상으로 상승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 요소로 자리잡게

33) 1985년 1호 문건에서는 각종 고기류와 채소, 과일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할당수매와 배급제를 폐지하고 자유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발표하였다. 실시 시기와 범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決定하도록 하였다.

34) 北京市의 경우 副食品 價格의 자유화로 약 1500개 품목의 價格이 약 30-50% 상승하였다.

되었다. 이는 副食品의 流通市場 미발달, 流通體系의 미확립, 각종 사료용 작물의 生産 狀況, 지역별 특성 등이 맞물려서 발생한 결과이다. 副食品 生産過程과 流通過程, 市場構造의 불 조화로 인하여 주요 副食品의 市場價格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北京, 上海, 天津 등 3대 도시에서는 1987년 말에 다시 돼지고기(豬肉), 계란(鷄蛋), 백설탕(白糖) 등에 대해 배급제가 실시되었다³⁵⁾. 채소에 대해서도 계절별로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價格규제가 실시되었다. 北京, 西安, 大連, 哈爾濱, 武漢 등 10여개 도시에서는 주요 야채 품목에 대해서 상한제가 실시되었다³⁶⁾. 上海나 蘭州에서는 固定價格이 다시 실시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價格 補助金を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의도대로 달성되지 않았다. 價格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價格 補助金 지출액은 줄었으나 市場價格 상승으로 인하여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임금 등을 통하여 지불하는 價格 補助金이 더욱 크게 증가되었다. 天津市의 경우 과거 副食品의 배급제 하에서 상업기업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불하던 價格 補助金은 약 2억원 이었다. 副食品 價格 상승으로 인하여 消費者에 대한 물가수당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형식만 달리할 뿐 동일한 성격의 價格補助金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³⁷⁾.

이처럼 副食品 價格의 자유화가 計劃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각종 副食品과 관련된 수급상의 불균형이 市場機構를 통해서 調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副食品 價格의 완전자유화에 대한 실패는 다시 副食品 價格의 決定에 대한 市場과 計劃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35) 동배급제는 과거의 배급제 하에서는 국영상점에서만 필요로 하는 육류를 구입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市場에서도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고 여타의 각종 육류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36) 1987년의 價格폭등으로 인하여 中央當局이 價格抑制政策을 강력하게 실시하게 되자 主要 채소에 대해서도 수요공급에 따른 價格決定을 제한하고 價格을 管理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한 商業企業에 대해서는 價格補助金を 통하여 財政적인 補助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37) 435만명에 대한 노동자에게 1인당 7.5원의 물가수당을 지불하게 될 경우 약 4억원의 價格補助金を 지출하게 된다.

으로 副食品 수급의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流通體制의 미비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市場機構에 의해서 副食品 價格을 決定하고자하는 방침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市場과 計劃을 결합하는 형태로의 후퇴와 市場을 통한 價格의 완전한 자유화 과정을 반복한 것은 中國 經濟改革 추진의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價格改革에 있어서 市場機構로 나아가는 中間過程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불완전한 제반 조건 아래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市場機構로 전환하는 데 대한 점진적 준비 과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iii) 농산품 價格自由化의 재추진

1992년까지는 예약 收買制가 후퇴하고 통일수매 방식과 동일한 성격의 수매방식이 유지되었다. 이는 농산물 價格決定 방식의 市場價格體制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관련된 제반 제약 조건의 극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결과이다³⁸⁾.

그러나 物價安定化 조치로 인하여 농산물의 價格이 안정되고 市場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새로운 農產物 價格改革이 추진되었다. 물론 이것은 1992년 經濟改革의 광범위한 추진과 크게 맞물려 있다. 1992년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전반적인 價格改革과 함께 農產物 價格의 자유화 범위가 계속하여 확대되어 왔으며 1993년에 들어오면서 中央計劃當局은 政府 收買價格을 완전히 자유화시키고 배급제도를 폐지하는 등 食糧市場의 폭넓은 開放화를 추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全國 28個省, 市, 自治區의 2,000여개 현에서 계약수매와 배급제도를 폐지하고 糧谷의 수매와 소매가격을 완전히 자유화하였다. 특히 北京市가 同年 5월에 糧穀 소매가격을 전면적으로 자유화시키면서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價格自由化 조치가 추진되었다. 또한 1993년 말에는 國家收買 糧穀에 대하여 수매수량은 政府가

38) 농산물 流通體制의 확립, 生産의 계절적, 지리적 편차의 안정성, 수요공급의 안정 등의 확보가 농산물 價格改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제하면서 價格은 市場機構에 의해서 決定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決定하였다³⁹⁾. 이는 政府의 수매에 대한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 農産物의 價格은 市場機構에 의해서 決定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격적인 農産物의 價格改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農産物 價格改革을 둘러싼 각종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農産物 價格改革의 커다란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農産物의 價格開放이 이루어지면서 農産物價格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특히 1993년 말부터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심각한 물가 불안을 야기하였다. 실제로 동년 10월중의 北京地域 주요 農産物價格은 전년동기에 비해 食糧類는 최고 94%, 飼料穀物은 100%, 水果類는 66%, 畜産物은 50%까지 상승하는 등 農産物價格의 급등세를 보여주었다⁴⁰⁾.

주요 食糧을 비롯한 肉類, 水果(과일)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農産物價格의 폭등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연결되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여러 가지 政策이 발표되었다. 즉 價格改革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需給의 불안정과 價格 과피 등을 방지하고 食糧생산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량보호가격 제도의 도입, 식량비축제의 구축, 식량안정기금의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農副産品 生産 및 流通을 위한 특별 대책 강구, 流通體制 改革 및 秩序 確立, 消費支出 抑制, 物價관리 및 監督의 強化, 物價監視 技能 強化, 固定資産投資抑制, 各급 省 政府의 物價認識 및 責任의 強調, 농업생산의 증대 등의 物價安定化 대책을 발표하였다⁴¹⁾. 同政策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를 과거와 같이 中央 統制式 방식으로의 후퇴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경제적인 政策手段의 동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39) 1993년11월의 전국농촌사업회의에서의 決定으로 (保量放價)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40) [농민일보], 1994. 10. 19.

41) [인민일보], 1994. 9. 6

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國務院이 物價安定 政策으로 내세운 내용을 보면 과거와 같은 政府 統制式 방식으로서의 후퇴보다는 市場機構를 통한 價格의 자유화는 그대로 추진하고 이를 제약해온 障礙要因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農產品 價格改革과 價格補助金の 역할 변화

中國의 價格補助金은 國家財政에서 생산기업이나 도시 및 농촌거주민에게 商品價格의 상승을 보전해주는 方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價格補助金은 소매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農副產品 收買價格에 대한 補助金이다⁴²⁾. 農民의 생산을 격려하기 위해 국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化學肥料, 農藥, 糧食, 飼料, 棉花, 燃料 등 計劃收買 商品을 低價로 供給할 경우 低價供給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는 供給기업에 대해서도 價格補助金을 지급하였다.

中國 統計에 따를 경우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지불된 價格補助金은 약 2,827억 원으로서 동기간 中國의 財政收入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⁴³⁾. 中國의 價格補助金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價格補助金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1978년에는 약 11억 원이었던 補助金이 1990년에는 약 380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둘째, 價格補助金 가운데서 食糧, 棉花, 食用油의 價格補助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8년에서 1990년까지의 이들 商品 관련 價格補助金 총액은 약 2,152억 원으로 전체 價格補助金의 75.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1985년에서 1989년까지 北京, 天津, 上海市의 糧油

42) 工產品에 대한 價格補助金은 原資材 價格 상승으로 인해 生産費用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며, 商業企業의 수입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으로 이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도 工場企業에 補助金이 지불된다. 또한 收入企業이 收入品 價格 상승에도 불구하고 國內 價格을 인상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 收入企業들에게 補助金이 지급된다. 중요한 消費財價格이 상승할 경우도 國家는 勞動者에게 補助金을 지급해 왔다.

43) [中國財政年鑑], 각년호 참조.

副食品 價格補助金 총액의 약 73.2%를 차지하였다.

셋째, 價格補助金の 증가율이 財政收入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1978년 대비 1990년의 價格補助金の 年平均 증가율은 34.1%로 약 32.9배 증가한 반면 財政收入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1.7배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넷째, 대도시의 價格補助金이 財政支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는 사실이다. 1985년에서 1989년 기간 財政支出에서 價格補助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北京市 55.7%, 天津市 49.8%, 上海市 47%로서 전국 평균보다 약 12.3%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中國에 있어서 價格補助金の 중요한 經濟적 역할은 생산의 촉진과 국민의 生活安定, 經濟改革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1978년 대비 1989년의 農副產品 收買價格은 182.2% 인상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食糧의 收買價格은 24.8% 상승되었다. 그 결과 同期間 동안 糧, 棉, 油에 지출된 價格補助金은 總 1,869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中國 經濟에 있어서 價格補助金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았다. 價格補助金 규모의 팽창은 國家財政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中國의 國民收入에서 차지하는 財政收入의 비중이 매년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財政支出에서 차지하는 價格補助金の 比重은 오히려 증가해왔다. 즉 국민수입에서 차지하는 財政收入의 比重은 1978년의 37.2%에서 1990년에는 21.5%로 낮아졌음에 반해 價格補助金이 財政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0.9% 수준에서 1990년에는 12.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中國에 있어서 價格補助金은 財政支出의 증감과 상당히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⁴⁾. (< 표 III-2 >참조)

44) 財政支出과 價格補助金の 추정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y=0.388+4.378x$ ($F=19.1$, $R^2=0.5778$) ※()은 t 및 F값임.

< 표 III-2 > 연도별 價格補助金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합 계	양곡, 면화, 육류	육 류	기 타
1978	11.14	11.14	-	-
1979	54.85	54.85	-	24.35
1980	117.71	102.80	-	14.91
1981	159.41	142.22	-	17.19
1982	172.22	156.19	-	16.03
1983	197.37	182.13	-	15.24
1984	218.34	201.67	-	16.67
1985	261.79	198.66	33.52	29.61
1986	257.48	169.37	42.24	45.87
1987	294.60	195.43	42.74	56.43
1988	316.82	204.03	40.40	72.39
1989	373.55	262.52	41.29	69.74
1990	380.80	267.61	41.78	71.41
1991	373.77	267.03	42.46	64.28
1992	321.64	224.35	38.54	58.75
1993	299.30	224.75	29.86	44.69

자료: [中國財政年鑑], 各年号 참조.

가격보조금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재정정책의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었다⁴⁵⁾. 여기에 기업의 손해보조금까지 고려할 경우 중국 중앙정부는 매년 약 1,000억원 수준의 재정보조금을 지불해 왔다고 볼 수 있다⁴⁶⁾. 그 결과 재정적자도 매년 증가해 왔다. 1978년에 약 10억원 정도 黒子を 보이던 財政收支는 1990년에 이르러서는 약 150억원의 財政赤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45) 價格補助金은 四川省의 경우 1991년 2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吉林省과 黑龍江省도 각각 25억원과 20억원의 수준에 달해 양곡과 면화의 생산량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보조금 지출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6) 이는 중국 재정수입의 약 1/4 수준이다.

價格補助金은 糧穀이나 棉花생산이 많은 지역의 地方政府로 하여금 財政負擔을 가중시키는 要因이 되었다⁴⁷⁾.

또한 계속해서 증가되어 온 價格補助金은 農山産品 價格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최근 몇 년간 物價安定을 위해서 사용되어 온 價格補助金은 價格을 한층 왜곡시키는 要因이 되었으며, 價格補助金을 많이 받는 農山産品 價格의 경우 需要供給을 반영하는 정보로서의 역할이 감소되었다. 價格補助金이 많은 農山産品일수록 價格은 가치로부터 괴리되었으며 理論價格에 따른 목표 가격의 실현이 어려웠다⁴⁸⁾中國의 價格補助金이 1990년까지 계속해서 확대되어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농업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文化革命 기간 누적된 농업의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부터 中國政府는 소매가격은 凍結한 상태에서 農山産品의 收買價格을 계속해서 인상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농업 생산량의 증가가 計劃대로 달성되지 않음으로써 農山産品 生産을 자극하기 위해 계속해서 農山産品 收買價格을 인정한 반면 批發價格은 이에 상응하여 調整하지 않음으로써 價格補助金을 증가시켰다. 한가지 예로 稻米의 경우 1988년 國營商店의 統一收買價格은 100그램당 0.40원, 協商價格은 0.70원 수준이었으나 중소도시 消費者 價格은 장기적으로 0.2원 수준을 유지해 오음으로써 收買價格과 零售價格의 차이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⁹⁾.

47) 價格補助金의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되었다. 즉 政策적 補助金과 經營不實로 인한 손실에 대한 補助金의 구별이 어려워져 經營者의 經營不實로 인한 손실에도 補助金이 지급되는 상황이었다. 補助金을 통해서 企業損失을 보전할 수 있는 企業들은 經營管理의 개선이나 利潤의 제고 등에 대한 노력보다는 보조금을 받아내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심지어는 價格補助金を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을 담보로 한 일종의 어음까지 유통됨으로써 유통부분의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정상적인 企業活動을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었다.

48) 식용유 가격을 예로 볼 경우 1985년의 통일수매가격과 판매가격차이는 100그램당 27.16원 이었으나 1988년에는 51.15원으로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1킬로그램 판매시 146.5원의 가격보조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49) 楊良初外, “1979年以來我國價格補貼情況分析”, [中國物價年鑑1991年], 北京: 中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던 價格補助金이 1992년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380억 원에 달하였던 價格補助金은 1992년 321억 원으로 낮아지고 다시 1993년에는 29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전반적인 價格自由化의 영향 때문이며 이 중에서도 糧穀, 棉花 및 肉類에 대한 價格補助金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價格자유화가 1993년에 87.5% 수준으로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대한 價格補助金 수준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농산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糧穀 및 棉花에 대한 政府 收買量이 유지되고 있고, 同農産物에 대한 收買價格과 零售價格의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 농산품 價格自由化의 意義

中國 農産物 價格改革의 궁극적인 목표는 市場의 수급에 의해서 價格이 決定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농업이 中國 經濟에서 지니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볼 때 市場機構를 통한 價格의 자유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달성되어야 한다. 첫째, 農民의 생산비용과 利潤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나아가 消費者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農産物價格도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政府의 財政負擔을 줄여야 하며 政府의 財政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價格 補助金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셋째, 농민의 생산의욕을 자극하여 質과 量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식량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中國의 농산물 價格改革은 몇 가지 제약조건에 의하여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여왔다. 즉 流通體制의 미발달, 巨視적, 地域적 조절 기능의 미비, 농산물 보관 창고의 미발달, 交通運수상의 비효율성 전국적 수급불균형 調整의 어려움 등은 농산물 價格改革의 성공적인 추진을 항상 제약해왔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조절기능이 미비 되어 있음으로써 과잉공급 지역은 판매난

國物價出版社, 1992, p. 26.

에 직면하는 반면에 초과수요 지역은 공급부족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초과수요 지역은 해당 農産物價格이 폭등함으로써 해당 농산물의 價格自由化가 후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中國의 농산물 價格改革은 동 제약조건 하에서 價格自由化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약조건을 극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價格自由化의 극대화 정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동 측면에서 본다면 計劃의 성격을 지닌 統一收買에 市場價格의 성격을 지닌 協議價格이나 超過收買價格의 성격을 지닌 統一收買價格에 市場價格의 성격을 지닌 協議價格이나 超過收買價格의 제도를 적절히 결합하면서 價格改革을 추진해온 수단은 中國적 現實의 제약조건 하에서 價格自由化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했던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약조건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는 計劃部門에 중점을 두고 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경우는 다시 價格自由化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計劃部門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 농산물 價格改革이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中國의 농산물 價格改革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中國의 1980년대 전후반의 농산품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이라는 농산물 價格改革의 성과는 中國 농업의 한계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農副食品의 경우는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에 비교적 成功했다고 볼 수 있다. 식량이나 면화의 價格이 초과수매, 협의수매, 예약수매의 方法을 통해 市場價格의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농산품가격이 市場의 수급에 의해 決定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로 보여진다.

둘째, 中國의 農産物 價格改革은 國家計劃價格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의 범위와 폭을 市場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오며 따라서 市場이 상당히 위축되는 기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기간은 농

산품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計劃價格에 의해서 決定되는 농산물 거래 비중이 經濟改革 추진 당시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國家指導價格이나 市場價格에 의하여 決定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넷째, 농업생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식량뿐만 아니라 副食品의 공급량도 市場價格이 도입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크게 증대되었으며 공급되는 商品의 질도 개선되었다.

農產物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제약조건들은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제약조건들로 인하여 市場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온 농산물의 거래방식이 計劃當局의 주도아래 거래되는 방식으로 후퇴될 가능성이 항상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추진된 農產物 價格自由化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流通市場의 확립이다. 농산물 도매와 같은 流通市場의 발달이 있기 전에는 지역별 농산물 수급불균형이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國家管理 農產物 價格과 市場價格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아직도 여전히 中國의 농산물 유통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발달이 미진한 편이며 市場의 통일성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송수단의 발달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農工間 교역조건 的不均衡이 개선되어야 한다⁵⁰⁾.

그러나 제약조건 중 일부 내용은 中國 經濟의 전체적인 구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農產物 價格改革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농업의 價格自由化 과정은 中國 經

50) 농공간의 協商價格差를 양식과 화학비료를 통해서 볼 경우 양식의 價格은 톤당 1978년 294억원, 1980년 307억원, 1985년 383억원, 1989년 557억원, 1990년 528억원이었으나 화학비료 價格은 톤당 1978년 231억원, 1980년 234억원, 1985년 369억원, 1989년 636억원, 1990년 630억원으로 1985년까지는 양식의 톤당 價格이 화학비료 價格에 비하여 높았으나 이후는 동 價格比가 역전되어 1989년에 들어와서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中國物價年鑑1992], 1993, p.541).

濟의 농업 외적 상황에 따라 영향받을 가능성이 항상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工產品 價格改革의 전개

가. 計劃經濟 하의 工產品 價格決定 방식

中國에는 네 가지 種類의 價格이 存在한다. 工產品 공장도가격(工場價), 농산물 수매가격(農產物收買價格), 도매가격(批發價格), 소매가격(零售價格)이 그것이다. 工產品 공장도가격과 농산물 수매가격은 기본적으로 工產品과 농산품 생산者가 생산품을 판매할 때의 생산자가격이며 도소매 價格은 최종사용자나 工產品 및 농산품의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消費者價格이다. 工產品 공장도가격과 農產物收買價格은 다른 價格들을 책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中國價格體系의 기초가 되고있다. 예를 들어 공산품과 농산품 도소매 가격은 流通費用과 도소매의 利潤마진에 공장도가격과 농산품수매가격에 대한 세금을 합계해서 책정된다.

도소매가격이 工產品 공장도가격과 농산품 수매가격에 기초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 價格 사이의 독립성은 실제이상으로 분명한데 政府에서 세금을 調整한다든지 도소매 價格 수준에 利潤을 調整함으로써 다른 價格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의 價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소매 價格에 대해서 공장도매가격이나 農產物 收買價格 중 하나가 상승할 경우 그 효과는 도소매 가격에 稅金이나 利潤을 調整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결국 도소매 가격의 수준이나 구조는 완전히 工場價格이나 농산품수매가격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計劃經濟 하의 공장도가격의 결정권한은 中央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價格은 中央이나 지방정부에 의해 決定된 이후 고정되었으며 생산제품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졌다. 주요 工產品들은 일차 혹은 이차 商品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의 價格은 價格當局이나 中央政府 혹은 관련 中央

工産品委員會에 의해서 직접 책정되었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工産品들은 세 번째 商品 群으로 분류되어 地方政府에 의해서 價格이 決定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工産品 工場價格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經濟改革 추진 이전에는 대부분의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中國에 있어서의 工産品 공장도가격도 비용합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공식에 따르면 生産品價格(p)은 固定費用(c), 可變費用(v)에 經濟적 剩餘(s), 즉 利潤을 합하여 책정된다.

$$P=C+V+S$$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價格 책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비용합계 방식을 응용하였기 때문에 中國은 平均費用 合計 원리를 채택한 것이다. 즉 이에 따를 경우 工産品 공장도가격은 평균생산비용에 일정 정도의 利潤마진과 工産品 공장도가격에 대한 세금을 합산하여 정해진다. 中國의 費用 概念은 改革 以前에는 동구의 이것들과 유사한 것이었다. 비용 속에는 가변비용으로 취급되는 총 임금과 고정비용으로 취급되는 감가상각, 연료 및 原資材를 포함한 原材料 費用이 포함된다. 비용 속에는 은행의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대출비용과 자본에 대한 이자는 제외되었다. 감가상각도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동구 社會主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價格에 있어서 利潤과 稅金의 구성은 剩餘價值와 동일한 몫으로 형성되었다. 理論적으로 개별 생산물에 있어서 剩餘價值는 經濟 내의 총 剩餘價值를 개별 생산물의 일차적인 생산비용에 比例해서 할당하는 方法으로 이루어진다.

工産品の 공장도가격은 위와 같은 공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費用價格 개념인 것이다. 실제 工産品 생산자를 위한 공장도가격은 이들 기초 費用價格에 적절한 수정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生産製品에 대한 價格은 이러한 基礎價格의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왔다. 여기에는 장기의 수요 공급 조건과 政府의 政策목표, 즉 工産品

생산을 자극하고 소비를 억제하는 것, 혹은 농산품과 工産品間的의 교역조건, 所得分配와 같은 내용들이 동시에 고려되었다.

中國의 工産品 공장도가격은 1950년이래 생산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調整되어 왔다. 1950년대 초에는 工産品 공장도가격이 여전히 市場에 의해서 決定되고 있었다. 價格은 美國의 무역금지 조치와 韓國戰爭 産業復舊 需要에 기인되어 급격히 상승하였다. 중공업 제품 가격은 1953년 政府가 價格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함에 따라 한국 전쟁당시의 價格水準에서 凍結되었다. 輕工業 製品 價格도 개인상점들과 주요 생산기업이 社會主義로의 전환 과정을 겪게됨에 따라 1950년대 초에 새롭게 형성되었다.

價格調整의 전체적인 효과를 볼 경우 < 표 III-3 >에 나타난 대로 中國의 工産品 공장도가격은 1953년이래 계속해서 하락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1년과 1965년의 대약진운동의 경제적 실패 기간만 제외하고 모두 일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價格이 증가했다가 1965년부터는 다시 1961년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과 1978년 사이의 공장도가격과 평균원가의 변화 정도는 매년 평균 각각 18.4%와 0.7% 정도 하락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3년이 후에는 단지 두 차례의 價格調整과 부차적인 價格調整이 있었다. 두 차례의 價格調整은 1956년과 1967년에 이루어졌는데 重工業 製品의 가공분양 있어서 실질적인 價格의 下向調整을 포함한 것이었다. 부차적인 價格調整은 특수한 제품군에 대한 약간의 價格調整을 포함한 것이었다. 이는 重工業과 輕工業 분야에 걸쳐 오랜 기간 추진되었다. 價格調整의 일반적인 원칙은 價格에 生産費用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政府의 주어진 價格政策 목표 하에 고려되었다. 그 결과 生産費用이 증가한 제품의 價格은 上向 調整되었다. 石炭價格은 5년마다 上向 調整되는 경향을 보여주

<표Ⅲ-3> 國營기업의 공장도가격 및 평균원가 지수 추이

단위: %

연 도	공장도가격	평균원가	연 도	공장도가격	평균원가
1950	100.0	-	1967	93.9	45.0
1951	113.9	100.0	1968	91.9	46.1
1952	113.2	97.5	1969	88.8	43.2
1953	109.5	94.3	1970	84.9	39.2
1954	107.8	88.3	1971	84.4	37.8
1955	106.4	81.2	1972	83.9	37.2
1956	98.5	73.1	1973	83.5	36.9
1957	98.7	70.1	1974	82.7	37.9
1958	98.1	64.3	1975	82.4	36.2
1959	98.7	60.0	1976	82.2	37.0
1960	98.0	58.4	1977	81.4	35.2
1961	102.9	66.9	1978	81.6	33.5
1962	106.9	63.9	1979	82.9	-
1963	106.3	57.8	1980	83.4	-
1964	104.2	52.8	1981	83.6	-
1965	99.3	48.2	1982	83.4	-
1966	95.1	43.9	1983	83.3	-

자료: [中國統計年鑑] 1984, p. 425

었는데 이는 1차 5개년 計劃 期間 生産費用이 매년 10%에서 30%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철강의 價格도 1953년부터 1978년 동안 세배 정도 인상되었다. 매번의 價格調整에서 價格의 증가율은 14.3% 내지 21.3%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목재의 價格도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표 Ⅲ-4 >참조)

重工業 가공분야의 價格은 가공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 결과 기계류의 價格은 빈번하게 하향 조정되었다. 2차 5개년 계획 기간과 文化大革命 기간을 제외하고 기계류의 價格은 매년 평균

3% 정도 하향 조정되어 왔다. 화공품가격도 1969년에 하향 조정되었다. 금속제품, 석유제품, 건축업 등의 중공업 분야도 유사한 價格으로 하향조정 경로를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III-4 >참조) 단지 전력의 價格만은 어떤 價格調整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III-4 > 공산품 공장도가격과 평균 생산비용 지수 비교

단위: %

산업 부문	1957		1970	
	가격	비용	가 격	비 용
야 금 공 업	82.6	75.7	80.7	42.6
전 력	107.3	61.3	107.4	49.1
석 탄 제 조	114.9	96.0	145.4	100.1
석유 가공업	108.1	59.8	93.4	42.4
화 학 공 업	74.6	60.0	41.5	20.2
기 계 공 업	83.2	45.6	60.4	11.7
건축 자재업	88.7	-	82.8	-
목 재 업	95.8	-	112.5	-
식품 가공업	90.1	-	117.4	-
방 직 업	100.8	90.6	100.2	74.0

자료: 財貿經濟資料 第2期 1985, p. 109

農産物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輕工業 製品의 價格도 동시에 인상되었는데 이는 농민의 所得 수준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農産物 價格이 인상됨에 따라 生産費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食品價格은 1957년과 1970년 두 차례 인상되었다. (<표 III-4 > 참조) 生産費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基本 生活必需品으로 간주되는 상품들의 價格은 價格安定 차원에서 변화가 없었으며 이 경우 기업의 損失 분은 정부의 補助金에 의해 보상되

었다.

工產品을 기초 원자재로 사용하는 輕工業 製品들의 공장도가격은 원자재와 가공비용이 하향 조정되는 데 따라 다시 하향 조정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였다. 기초 생필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제품들의 價格은 生産費用이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아니 하였다. 높은 價格 수준의 유지는 동제품의 消費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자본축적을 위한 政府收入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中國에 있어 공산품의 공장도가격이 조정되어 온 기준을 보면 計劃價格과 生産費用 간의 상관관계와 일치하고 있다. 공장도가격과 生産비용 지수의 시계열 자료(<표Ⅲ-3>참조)와 당해 연도 자료(< 표 Ⅲ-4 >참조)로부터 산정 된 회귀분석의 상관계수는 모두 신뢰수준 99%에서 유의 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價格이 生産비용의 변화에 따라 調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⁵¹⁾.



나. 공장도가격의 문제점

공산품의 공장도가격과 生産비용의 관계를 比較한다는 것은 실제 生産비용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中國의 工產品 공장도가격의 調整과 價格책정이 生産비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공장도가격이 그것의 실질적인 相對費用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生産비용의 조건들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價格의 조정은 이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조정되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中國의 공산품 공장도가격은 1950년대 초에 형성된 것이다. 이후 價格調整은 두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요하지 않은 상

51) 회귀분석 계수는 각각 0.2977과 0.4070으로 生産비용의 변화에 대한 가격조정 의 탄력성이 1 이하로 나타났다. 生産비용 변화와 이에 대한 가격조정 간의 차이는 가격안정이라든가 가격을 세금 수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정부의 가격 정책 목표 변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품들에 대한 약간의 價格調整이 있었을 뿐이다. 두 번째 理由는 價格調整의 범위나 폭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가격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던가, 다른 政府 政策 目標은 價格政策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던가 하는 또 다른 이유들에 의해 가격조정률에는 변화된 생산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中國의 공장도가격을 책정하고 조정하는 데 이용되었던 政府評價 費用이 實際 費用보다 항상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中國의 비용산정은 항상 한계비용 보다는 평균비용에 기초해 왔다. 여기에는 자본이나 대출 형식의 資本, 土地, 다른 형태의 자원에 대한 기회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예로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부과는 매년 3.7%에서 고려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固定資產의 손상이나 개조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자본의 생산설비 폐기 費用은 고려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相對價格과 生産費用間의 차이는 산업부문간 流動資本의 총량 측면에서 계산되는 이윤율의 격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79년의 경우 最高利潤率과 最低利潤率은 38%에서 1%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重工業 분야에서의 價格과 利潤은 가공분야에서 매우 높고 원자재 부문에서는 매우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輕工業 분야에서의 價格과 利潤은 非農產物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분야는 높고 농산품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中國에서 자원의 분배와 調整은 中央 計劃當局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價格은 보조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역할 수행의 필요성이 있었다. 즉 절대적인 필요성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價格은 수요공급과 生産費用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했다. 물론 이것이 計劃價格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산품 工場價格은 수요공급 상황이나 생산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價格이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했다.

計劃經濟에 있어서 價格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計劃當局이나 관리자들에겐 생산자원이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計劃當局은 투입 물과 산출물의 최적상태를 선정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가 필요했다. 中國의 경우 中央에서 計劃하는 것이 모든 내용에 걸쳐 철저할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관리자들에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투입과 산출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였으며 價格은 이러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관리자들에겐 최적적인 자원배분 선택에 필요한 정보 구실을 담당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中國의 工產品 공장도가격은 종종 需要와 生産費用을 왜곡되게 반영하였다. 그 결과 計劃當局이나 관리자들은 종종 투입과 산출 決定에 있어서 오류를 범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가공생산분야는 상대적으로 價格이 과대 평가되어 있어서 利潤이 높았으나 원재료 생산분야는 이와 반대였다. 그 결과 加工生産 분야에서는 적정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원재료 생산분야는 과소 투자되었다.

中國에서 일상 생활필수품들이 항상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도 이들 제품의 價格이 적정수준보다 낮아서 工產品 생산 기업이 생산을 통해 利潤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수요와 관계없이 價格이 과대 평가 되어 있는 제품들을 大量생산하는 방향으로 생산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企業行爲를 일삼았다. 이러한 왜곡된 企業行爲는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불합리한 價格 책정으로 인하여 生産要素의 적정 투입에도 비효율성이 발생되었다. 목재의 中國 內 價格을 國際市場 價格과 比較해 볼 때 中國 內 價格은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었다. 國際市場에서 철강의 톤당 價格이 목재의 톤당 價格과 같거나 플라스틱 價格이 목재 價格의 4배 내지 5배 수준이었다. 中國에서 철강과 木材價格의 比率은 5:1 혹은 4:1 이었으며 플라스틱과 목재의 價格비는 20:1 내지 30:1 이었다. 낮은 相對價格 측면에서 볼 때 管理者는 철강이나 플라스틱을 목재

로 대체함으로써 목재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中國의 工產品 공장도가격의 또 다른 문제점은 價格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기업의 經營活動을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며 통제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가공 생산분야의 製品價格은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동 분야의 생산기업은 적정 수준 이상의 利潤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효율적인 생산方式의 채택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生産製品의 價格이 과소평가 되어 있는 原資材 생산 기업들은 낮게 책정된 價格으로 인하여 기업의 효율성추구 노력과 관계없이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 기업 또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다. 工產品價格改革의 再調整

社會主義 計劃經濟에 市場經濟를 도입하는 시도가 이루어질수록 價格改革의 압력은 강하게 된다. 1979년 도매가격의 調整이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會議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決定의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해의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價格凍結을 취하는 政策 때문에 제한되었다.

1984년 10월의 12차 공산당 대회의 3차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經濟改革을 추진하는 政策이 채택되었고 다음해부터는 도시에서의 改革이 추진되었다. 經濟改革의 기본 방향은 市場經濟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과 命令性 計劃體制를 지도하는 計劃體制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價格은 단순히 計算 기능(Accounting)에서 자원배분의 기능(Allocative)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價格이 이러한 자원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價格이 지닌 정보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價格體制는 1985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計劃 기간 완전히 市場價格體制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졌다. 그러나 工產品 價格改革과 관련되어 이러한 計劃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1984년 말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1985년에는 價格 凍結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86년에 들어와서도 國務院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價格改革을 1987년으로 연기하는 決定을 내렸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추진된 價格改革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生産費用 計算方式의 수정이다.

자본의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률이 上向 調整되었다. 이 比率은 1980년에 기업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분 하에 0.5% 상향 調整되었다. 1983년에 이 比率은 다시 기계류 생산기업과 上海의 기업들에 한해서 1% 上向 調整되었다. 1983년과 1984년에는 더 많은 産業분야에 걸쳐서 생산기업과 연해성시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과 1987년 사이에 모든 생산기업들에게 새로운 감가상각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의 감가상각율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3.7% 내지 5.9% 상향 調整되었다. 빠른 기술진보로 인하여 자본설비들의 폐기를 계산하는 데에는 더 높은 감가상각율이 적용되었다.

固定資本과 可變資本에 대한 감가상각율의 적용은 기업의 자율성 확대 실험조치가 취해진 1980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固定資本에 적용되는 동 比率은 産業 부문에 따라 2.4%-6.0% 수준이었다. 可變資本에 대한 감가상각율은 모든 기업에 대해 2.5% 수준으로 일정하게 적용되었다. 이후 동 제도는 利改稅 제도가 도입된 1983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가변자본에 대한 부과는 1984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기업의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율 부과는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동 比率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 比率은 1981년의 5.0% 수준에서 1985년에 7.9%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지출을 위해 대출된 몫에 대해서는 국가 공정이자율에 비해 약 20%에서 50% 정도의 높은 벌금 이자율이 적용되었다.

둘째는 工產品價格 산정 방식에 대한 재론이다.

工產品價格 산정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價格책정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없다. 그 결과 다른 社會

主義 국가에서는 價格改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價格산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生産價格 내지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어 책정된 價格이 채택되기도 하였지만 中國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80년대 중반까지 실제 工產品 價格 산정에 채택된 방식은 여전히 과거 價格 決定방식이었던 비용합산 價格 決定 방식이었다.

셋째는 價格管理方式의 改革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價格改革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제시되었지만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이 채택되었을 뿐이다.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價格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좌절되어왔다. 1984년 공산당 12차 대회의 3차 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인 經濟改革의 추진은 價格決定에 대한 자율성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固定價格이 적용되는 범위를 25% 수준까지 下向調整하고 不同價格을 포함, 市場價格의 범위를 7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였다⁵²⁾. 그러나 1984년 4/4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工產品 販賣價格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다시 실시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욕적인 시도는 시작과 함께 좌절되는 경험을 지니게 되었다⁵³⁾.

넷째는 工產品 價格의 再調整이다.

주요 공산품에 대한 價格調整이 1979년이래 이루어져 왔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石炭, 電力, 生鐵, 鋼材 등의 제품을 포함한 100여 종류의 主要 製品價格이 調整되었는데, < 표 III-5 >에는 동기간동안 調整된 價格總額과 부문별 調整된 價格 總額, 나아가 그 구성비가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7년 동안 上向 調整된 工業品 價格總額은 256억 3,300만원이며 下向 調整된 액수는 19억 9,600만원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上向 調整된 금액은 236억 3,700만원으로 이를 100으로 하여 각 부문별 上向 調整된

52) 國務院辦公室 1984. p. 323

53) [當代 中國의 物價] 1984 p. 323-329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사용 에너지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石炭製品이 20.9%, 鐵, 冶金 製品은 28.4%로 두 부분이 49%를 차지하여 上向 調整된 價格金額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機械, 電子製品의 경우는 0.2%에 불과하여 價格이 거의 上向 調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제품들의 調整價格 金額을 고려해 볼 때 동제품의 價格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Ⅲ-5>참조)

< 표 Ⅲ-5 > 공업부문별 價格調整 현황(1979-1985)

단위: 억원, %

상 품 분 류	상 향 조 정	하 향 조 정	조 정 총 액	제품별 비중
합 계	256.33	19.96	236.37	100.0
석 탄 제 품	49.37	-	49.37	20.9
석 유 제 품	3.81	-	3.81	1.6
석 유 화학제품	17.40	1.05	16.35	6.9
전 열 제 품	17.55	-	17.55	7.4
철 야 금 제 품	75.51	8.47	67.04	28.4
비 철 금속제품	12.53	0.81	11.72	5.0
화 공 제 품	19.11	3.82	15.29	6.5
건 재 제 품	17.43	0.45	16.78	7.2
기계및전기제품	5.82	5.25	0.57	0.2

자료: [當代中國的物價] 1989. p. 152

보다 세부적인 제품별 價格調整 현황을 보면 < 표 Ⅲ-6 > 에서와 같다. 즉 여기서도 앞에서 언급한 각 공업 부문별 價格調整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不透鋼冷軋薄板, 造船板과 같은 기계공업 제품의 價格들은 1981년에 비해 1985년에는 전반적으로 하향 調整되어 價格上昇率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石炭, 天然煤氣 및 價格은 1981년 價格對比 평균 45%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價格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향 調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표Ⅲ-6〉참조)

〈 표 Ⅲ-6 〉 주요 공업제품별 價格構造 調整

商 品 名	單 位	1981年價格	1985年價格	調整價格
煤 炭	톤	26.7	33.1	24.1
天 然 煤 氣	千m ²	50.0	115.0	130.0
汽 油	톤	228.5	331.1	44.9
鐵 廣 石	"	42.5	62.5	47.1
礁 炭	"	90.0	120.0	33.3
煉 鋼 生 鐵	"	200.0	265.0	32.5
鋼 材 中 型	"	395.0	460.0	14.5
昌 錠	"	2700.0	4,000.0	45.3
錫	"	11500.0	28000.0	143.5
水 泥	"	56.0	90.0	60.7
板 玻 璃	10m ²	11.5	20.0	73.9
燒 礮	톤	111.4	170.0	49.1
礮	"	200.0	380.0	90.1
不 銹 鋼 冷 軋 薄 板	"	11000.0	9500.0	-13.6
托 拉 機, 上 海 50 型	臺	11300.0	10500.0	7.1
中 型 摩 托 車 東 風 140 五	톤	23000.0	19500.0	-15.2
機 床 y3150E	"	28000.0	25000.0	-10.7
造 船 板	톤	780.0	720.0	-7.7

자료: [當代中國的物價]. 1989, p. 152

다섯째는 80년대 중반까지의 工產品 價格改革의 평가이다

80년대 전반의 價格改革을 통한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工產品價格에 의해 주어지는 정보의 질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價格 그 자체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원 分配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決定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中國의 工產品 분야에서 지령성 計劃 價格體制를 指導價格 혹은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80년대 중반까지의 價格改革은 과거 강력한 中央 計劃經濟體制 하에서 누적된 각종 矛盾과 왜곡된 價格構造로 인해 그 성과나 효과가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급속한 價格改革의 추진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雙軌制의 役割과 經濟環境의 變化

1. 雙軌制의 실시와 多重價格制의 확립

中國은 原材料와 에너지 등의 生産財 부분에 政策적으로 利潤率을 낮게 억제시켜 동 부문 生産製品 價格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왔다. 이로 인하여 동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生産기업은 計劃經濟 운영체제 아래서 만성적인 적자를 겪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解決과 동 부문 生産기업의 生産성 향상 및 경영 合理化를 위해 生産財의 政府 計劃價格을 引上調整하고 市場機構를 활용하고, 計劃量 이상으로 超過 生産된 製品의 경우는 割增價格과 市場價格에 의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價格改革을 추진하였다. 즉 1984년 5월 10일 國務院은 國營 工業企業의 자주권 확대에 관한 잠정규정을 발표하여 國營企業이 生産한 生産財의 일부분을 市場價格으로 자율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價格 자유화를 정식으로 추진 하였다. 그 결과 동일 生産製品에 대해 政府 統一 分配價格과 市場價格 사이에 각종 價格이 존재하는 多重價格(Multiple price system)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多重價格制의 존재는 國家計劃 당국에 의해 일률적으로 價格이 책정 관리되던 방식으로부터 市場機構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多重價格制의 존재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費用上昇의 해소 능력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中央 政府의 財政 補助 能力에 한계가 있을 때나 市場機構의 미발달로 인해 市場經濟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市場價格의 변동 상황은 計劃當局이 計劃價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 셋째, 기업이 計劃以

외의 超過生産物을 市場價格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판매함으로써利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넷째, 生産을 자극, 供給을 늘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製品의 질적 向上 등을 기할 수 있다. 다섯째, 中央政府에 의한 統一分配 물자의 양이나 정부결정 價格의 품목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 計劃經濟 운영체제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多重價格制의 실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정부가 정한 生産計劃量을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市場價格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많이 증대시키려고 함으로써 生産계획량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계획메커니즘의 기능 저하가 발생될 소지가 높다. 둘째, 多重價格制 하에서의 市場調整價格은 전반적인 市場機構 하에서의 價格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실제적인 수요 공급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政府決定價格과 市場價格, 이두가지 모두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多重價格制는 제품의 유통길서를 혼란시키고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物價上昇을 유도할 수 있다.

生産財 價格을 중심으로 하여 多重價格이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호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計劃價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중앙 計劃當局의 計劃分配에 따라 生産하는 기업들도 계획초과분에 대해 市場價格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地方國營기업의 生産財 價格은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향진 기업을 포함한 농민의 집단 혹은 개인경영에 대하여 價格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다섯째, 生産財 거래를 위하여 物資交易中心을 각 지역별로 설립하고 해당 성 이외의 기업과 기업집단, 개인 경영 기업들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生産財와 관련해서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多重價格制는 과거 중앙의 계획당국이 價格을 통제할 때에 비하

여 기업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市場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多重價格의 존재가 기업들로 하여금 生産製品的의 전매 등을 통한 부정한 투기 행위를 조정함으로써 市場秩序의 混亂을 가속화시키기도 하였다⁵⁴⁾.

이와 같은 장단점을 지닌 多重價格制의 실시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면 1981년에 제품의 指導價格, 協議價格 및 不同價格이 지방에 의해 제정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1984년에는 工業企業 자주권의 확대에 따라 計劃內 2%의 生産物資와 計劃外 生産物資에 대해 基礎價格의 상하 20% 범위 내에서 價格去來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1985년에는 기업 스스로 市場價格에 의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되어 雙軌制를 비롯한 多重價格制度가 확립되었다.

즉, 1984년 5월 10일 國務院의 조치에 따라 鋼材, 銅, 鋁, 아연, 천연가스, 가성소다, 고무제품 등에 있어서 이들 제품이 計劃量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計劃價格의 20% 내에서 市場價格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되었으며 鋼材의 最終商品은 計劃量의 2%까지 기업이 計劃價格 以外の 價格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⁵⁵⁾.

이러한 조치는 계속 확대되어 2%까지 기업이 計劃價格 이외의 價格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85년 1월 25일 국무원은 20%로 규정되어 있는 不同價格 범위를 철폐하였고 적용 품목 수도 1, 2차 에너지 산품, 석유제품, 코크스, 목재, 금속, 광산물 제품에까지 확대하였다.

雙軌制의 도입을 통한 價格改革의 추진 결과 확립된 多重價格制의 내용을 철강제품을 예로 본다면 鋼材 價格은 國家 統一分配 價格, 地方 발주가격, 收入 割增價格, 冶金工業部가 통제하는 變動價格, 계획 초과 부분에 적용되는 不同價格과 市場價格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54) 中國의 기업들은 同一 生産製문에 대해서 적용되는 計劃價格과 市場價格의 차를 이용한 경제적 준 지대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편법을 동원하여 가격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石原享一, 1989, pp.24-27)

55) 張卓元 外, 「中國生産資料價格改革」, 1992, pp. 86-87.

多重價格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을 석유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1>참조).

中國 政府는 1961년 3월에 지역 차와 生産費用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새로운 原油價格을 제정하였다. 이는 50년대 후반의 소련의 價格體制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었다. 그후 1970년까지는 톤당 130원의 價格이 유지되었으며 1971년에 들어오면서 20% 정도의 가격인상이 한 차례 이루어진 이후 1988년까지 동 價格은 고정되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유정 건설비용은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조사비용도 2.5배 증가하였다. 원유의 총생산비용은 동기간 동안 1.9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費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공은 고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유전들은 적자경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이들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을 보조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1983년부터 中國 計劃當局은 원유 生産에 대한 정부경영제를 도입하고 청부계약기준 이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輸出을 하거나 國際市場 價格으로 國內市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결과 高價石油가 등장하여 석유의 多重價格이 출현하였다. 高價石油 價格은 大慶油田이 톤당 650원, 勝利油田이 톤당 520원 수준이었다. 다시 1985년의 조정을 통해 大慶油田의 石油價格은 545원, 勝利油田의 石油價格은 474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그러나 동 價格들은 중앙 計劃價格의 供給價格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표 IV-1>참조) 이후 1988년 2월에 政府固定價格과 高價石油價格은 각각 톤당 10원 정도의 소폭 인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인상은 석유생산 기업들의 경영개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大慶油田은 1960년 생산 개시 이후 1988년 처음으로 2,612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공업용 중유의 경우도 정부 固定價格은 톤당 115원인데 비해 國家指導價格은 145-330원, 市場價格은 490원으로서 國家固定價格에 비해 4배정도 높

은 수준으로 多重價格의 형태를 띠고 거래되었다.

< 표 IV-1 > 多重價格制 하에서의 원유價格 변동 현황

단위: 원

	정부통제가격		고 가 석 유			
	1961-70	1971-88	1983		1985	1988
			6월 以前	7월 以後		2월
천연원료						정부
(전국평균)	130	103	650	590	545	통제
대 경	130	100	520	490	475	가격
승 리		100				
대 향		100				고가
요 하		100				석유
길 립		100				
익 중		100				각각
신 강	110	115				
청 해	115	115				10원
옥 문	120	130				
사 천	150	130				인상
장 경		130				
강 수		130				
하 남		130				
발 해		130				
동 북		130				

자료: 「價格理論和實踐」楊魯, 1987. 5, p. 25

1989년에 들어서면서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價格은 더욱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됨으로써 多重價格의 구조도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석유개발 資金不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國家計劃委員會는 中國石油天然氣總公司로 하여금 中國石化總公司에 計劃外 生産 고가원유를 280만톤 提供하도록 하였다. 그 상환 방법은 고가원유 價格을 공장도 최고한가에 매 톤당 120원 가산하도록 책정하고 동 가산금중 55원은 석유정제공장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65원은 中國石化總公司를 통해 구입한 석유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生

産하는 各 省. 市. 自治區 석유공사가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1989년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價格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어 原油分平價格, 計劃內石油最高價格, 計劃內石油最高上限價, 計劃外石油加算價格, 石油製品分平價格, 計劃內高價油, 計劃內石油加算價格, 計劃外限價油 등 매우 다양한 價格이 출현하였다.

2. 계획의 생산재 제품의 최고상한가 실시

1985년 초부터 中國은 計劃外 生産財 제품에 대해 價格開放을 실시하였다. 주된 목적은 生産企業으로 하여금 生産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生産을 자극하고 中國의 計劃經濟 내부에 존재해왔던 地下經濟와 비합법적인 價格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일 종류의 生産財 제품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른 價格을 가지는 生産財 製品의 雙軌價格이 형성되었다. 동 제도가 형성된 이후 生産財 製品은 상당 부분 中央政府의 統制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통화팽창과 맞물리면서 市場價格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러한 價格 폭등현상은 기본적으로 ‘不足經濟’로 특징 지어지는 社會主義 計劃經濟 하에서 計劃當局에 의하여 억제되어 있던 ‘투자애 굶주린 자’(investment hunger)와 ‘소비애 굶주린 자’(consumption hunger)가 동시에 ‘팽창적 욕구’를 분출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총 공급과 총 수요의 균형이 깨지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⁶⁾.

56) 이러한 내용은 이미 동구나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 計劃經濟의 분석에서 많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價格改革의 추진이 中國의 경우처럼 활발하게 진행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개념은 中國의 價格改革의 현상 파악에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生産財 價格의 폭 등을 막기 위해서는 生産財의 수급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통화발행의 억제, 기본건설 투자의 억제, 經濟發展 速度의 감속 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후자는 中國 經濟의 전 반적인 운영과 연관된 것으로서 生産財 價格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적 수단 등이 동원된 政策 집행이 필요하였다. 이에 協議價格으로 決定되는 商品에 대해 최고상한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官倒’나 ‘私倒’가 널리 퍼져 있는 市場의 혼란 하에서 행정적 간여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단으로 최고상한가가 실시되었다⁵⁷⁾.

工產品의 價格暴騰을 억제하고 市場秩序를 회복하기 위해 計劃外 生産製品에 대한 최고상한가를 설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1988년 1월과 1989년 3월에 발표되었다. 1988년의 措置의 주요 내용은 < 표 IV-2 >와 < 표 IV-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1988년의 조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 조치에서 決定된 최고상한가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려웠다. 많은 기업들은 하나의 제품에 두 개의 표를 발행한다던가, 계단식 판매방식 등에 의해 最高上限 價 制度를 피해 나갔다. 어떤 기업들은 利潤의 반환, 원자재의 반환, 무이자 대출의 제공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처음 실시되는 最高上限 價 制의 채택으로 이를 역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이 많이 노출되었다. 즉 공장도가격이나 완성품의 상한가는 정해졌으나 소매상품 가격이나 주요 原材料 價格에 대한 상한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제품, 규격에 대한 상한가는 정해졌으나 그 이외의 제품과 규격에 대해서는

57) “官倒”란 가격개방의 기회를 이용하여 일부 관료들이 권리를 이용하여 투기모리를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私倒”란 일부 사람들이 공직자와 결탁하여 계획내 물건을 싼 가격으로 사서 비싼 가격으로 넘겨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 표 IV-2 > 계획외 주요 生産財 最高上限價格

단위: 원/톤

생산재 및 규격	계획 외 생산자 가격상한(1988)	공정가격 (1984)
알루미늄인코트 특1-4호 <강재류>	6300	2730-2760
보통탄소 저합금대형강(형강,산형강)	1700	360-1550
보통탄소 저합금대형강(한강, 각강)	1160	
보통탄소 저합금중형강(형강,산형강)	1350	
보통탄소 저합금중형강(환강, 각강)	1210	
보통탄소 저합금소형강(형강,산형강)	1260	
보통탄소 저합금소형강(환강 각강)	1200	
선재(보통탄소, 저합금)각종규격	1300	525-850
증괴조(보통탄소, 저합금)50kg/m	1450	53
경괴조(보통탄소, 저합금)각종규격	1500	600-630
열압연환강 45호이상	1490	680-730
열압연환강 10-40호	1400	
열압연특수선재 각종규격	1560	740-780
특수증판 각종규격	1380	1260
조선용강판 각종규격	1300	665-1015
보일러용 강판 각종규격	1400	630-855
열압연저합금박판 2-4mm	1350	750-830
아연철판 <0.5mm	2850	850-1620
냉압연박판 1mm	1950	
냉압연박판 0.5mm	2400	650-1180
열압연박판 2-4mm	1350	400-1020

자료: [經濟參考], 1988. 1. 27

상한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중요 제품들이 동 제도의 영향권밖에 있음으로써 동 제도의 의도되었던 방향으로 효과를 가두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초기 상한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1989년 3월에 새로운 최고상한가 제도가 발표되었다.

1989년 3월에는 國家物價局, 物資部, 冶金部, 有色金屬總公司 등 4개 부서 연합으로 計劃外 鐵, 非鐵金屬 전반에 걸쳐서 최고 상한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에는 먼저 최고상한가의 調整이 포함되었다. 즉 1988년 1월의 조치에 발표된 상한가를 약간 높여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철 관련 제품의 공장도가격 最高上限價는 매 톤당 200원 수준으로 제고되었으며 주식의 최고상한가는 톤당 6230원 수준으로 설정되었다⁵⁸⁾. 이는 1988년에 정해진 상한가가 동제품들의 市場需給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고 價格과 價値의 왜곡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또한 동 조치에는 최고상한가 적용 품목 수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즉 鋼材, 銅, 아연 등의 원자재나 중간재뿐만 아니라 生鐵, 廢鋼, 鋼板, 製鍊銅, 粗銅 등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제품 종류와 규격을 기준으로 최고상한가가 정해지던 방식이 변경되어 계열 관련 제품 종류와 전체적인 규격에 따라 最高上限價格이 설정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89년의 조치로 인해 최고상한가 설정 方法도 변경되었다. 1988년의 조치에 따라 각 省, 自治區, 直轄市에 의해서 最高 銷售上限價格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몇 개 省市는 상한가 설정 권한을 하급 단위로 분산시켜 하급 단위에서 이를 決定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9년 3월의 조치에는 전국적으로 최고상한가를 통일하고 공장도가격의 최고상한가를 설정함과 동시에 판매가격의 최고상한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이전의 조치 아래서 발생되던 폐단들이 제거되도록 하였다. 또한 1988년의 최고 上限價格制는 현지의 최고상한가가 적용됨으로써 최고상한가 간에 편차가 발생되었으나 1989년의 조치에서는 최고공장도 上限價格制가 실시됨으로써 이러한 모순이 제거되었다.

58) 「中國物價年鑑1990」, 1991, p.27

행정관리도 강화되었다. 전국적인 統一最高上限價를 각 지방과 각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소득은 모두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의 두배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다.

< 표 IV-3 > 計劃外 石油의 上限 價格

단위: 원/톤

제품별가격	심 양	하르빈	중 남	서 북	화 북	화 동
70호가솔린						
생산자가격						
공정가격	580	580	620-630	460-660	580	580
상한가격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기업분배가격	1050	1060	1080	1080	1080	1080
도매가격	1120심양	1130	1140무한	1120	1150북경	1160제남
(상한가격)	1150길림	할 빈	1220성도	1190서안	1180	1220북주
램프용등유						
생산자가격						
공정가격	420	420	470-520	350-520	420	420
상한가격	950	950	950	950	950	950
기업분배가격	980(895)	990(895)	1010(910)	1010(915)	1010(915)	1010(915)
도매가격	1050심양		1140성도	1050우루	1080북경	1080상해
(상한가격)	1070길림		1070무한	1090서안	1090호투	1140북주
0호경유						
생산자가격						
공정가격	330	330	340-365	300	330	330
상한가격	895	895	895	895	895	895
기업분배가격	925(890)	935(890)	955(900)	955(900)	955(900)	955(900)
도매가격	1010심양	1005	1005무한	1010우루	1035	1015안경
(상한가격)	1035길림		1090성도	1045서안		1090북주

자료: [經濟參考], 1988. 1. 27, [經濟參考], 1989. 1. 28

참고: 1) 생산자가격의 공정가격은 1984년도 기준가격임.

2) ()안은 1983년 상업부 燃料局이 결정한 고가석유가격임.

또한 生産企業이 최고상한가가 정해진 상품생산을 피하여 最高上限價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을 生産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던가, 最高上限價 규정 상품의 生産을 감소시키는 행위, 계획내 상품을 계획외 상품으로 전용하여 판매할 경우 등에 대해 불법소득의 회수와 벌금의 부과를 강화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책임자 문책과 인 사적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최고상한가는 가격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기는 하였지만 일종의 행정수단이다. 政府에 의해 價格이 관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최고상한가가 정해진 商品들의 경우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로 인하여 이들 제품의 價格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고상한가와 같은 인위적인 價格政策은 價格改革의 일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해결하는 단기적인 政策手段으로 가능할 뿐이며 장기적인 政策手段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3. 雙軌制의 성과와 工產品 價格改革의 방향전환

1989년에 들어오면서 經濟秩序가 무질서해지고 매우 높은 물가상승이 발생하자 雙軌制 制度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두 가지 政策手段이 강구되었다. 하나는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計劃의 生産財에 대해 최고상한가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분권 화시켰던 價格管理 및 決定 권한을 中央으로 다시 귀속시킴으로써 일부 중요 品目에 대해 雙軌制를 폐지하고 單一價格制로 복귀시킨 것이었다. 이후 이러한 최고 上限價格制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經濟政策의 지속으로 1991년까지 계속해서 확대 적용되었다. 이미 1988년에 物價上昇등 經濟의 과열 조짐으로 中國 政府는 物價抑制와 주요 生産財에 대한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몇 건의 政策을 발표한 바 있다⁵⁹⁾. 1989년에도 重工業品 價格관리를 中心으로 管理權限

59) [國務院關於加強物價管理嚴格控制物價上張的決定] 1988 (中央通知文3號), [計劃外生産資料全國統一最高限價暫行管理辦法的通知] 1988 (中央通知文78號), [國務

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의 通貨膨脹과 物價上昇, 重工業去來市場의 혼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과거 各級 省, 市, 自治區 등으로 분권 화되어 있던 重工業品 공장도가격의 決定 권한의 상당 부분이 國務院으로 다시 집중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國務院이 관할하는 重工業品 공장도가격은 國家固定價格과 國家指導價格의 형식으로 決定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말에는 733종의 重工業品이 國務院의 直屬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鋼材, 銅, 아연, 鋁, 錫 등의 品目과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철금속의 주요 품목에 대해 最高限價가 실시되었다. 이 最高限價는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1989년 기간에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이후 中央에서 각급 하위 단위로 내려보낸 관련 通知文件 속에서 잘 밝혀지고 있다. 즉 이 文件에는 1989년 3월 24일 통지문의 발표와 집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두 개의 표 만들기(一貨兩票), 分配를 가장한 판매, 이윤의 반환, 무이자 대출, 여타 제반 대응 조건의 첨가, 재료 반환 등 雙軌價格制 하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雙軌制란 生產企業의 生産性 향상 및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市場機構를 활용하고, 計劃量 이상으로 초과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割增價格과 市場價格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써 二重價格制 내지 多重價格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9년이래 계속해서 추진된 生産財의 最高限價와 緊縮政策 등의 효과가 199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計劃外 生産財 價格이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計劃外 철강, 동, 아연, 알루미늄 등 철 및 비철 금속관련 제품들과 각종 주요 化工製品의 價格이 하락하였고 計劃의 石炭價格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雙軌制를 통해 진

院關於加強鋼材管理的決定] 1988 參照.

행되던 生産財의 價格改革⁶⁰⁾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計劃外 價格의 급상승으로 인한 生産費用 상승 분을 計劃內 生産製品에 반영시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計劃外 價格과 計劃內 價格의 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의 축소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中央 計劃 당국은 안정된 물가를 바탕으로 計劃內 價格을 대폭 인상 調整하여 市場의 수급 상황을 비교적 가깝게 반영하고 있는 計劃外 價格水準에 근접시켰다. 中央 計劃 당국은 計劃內外 價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國務院이 國家固定價格과 國家指導價格으로 관리하는 重工業製品의 價格을 대폭 引上調整 하였다. 調整總額은 168억원으로 전년대비 41.2% 증가된 것이었으며 이중 石炭, 石油 및 電力 등의 에너지 價格 調整總額은 121억원으로 調整總額의 72%, 전년대비 51.6% 증가되었다⁶¹⁾. 計劃內 價格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철과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의 경영상의 손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臨時價格과 特定價格制를 채택, 총 36억원 정도의 價格의 上向調整이 실시되었다.

鐵鋼企業을 예로 보면 석탄, 석유 및 전력 등의 에너지 價格의 引上調整은 철강 生産企業의 生産費用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연중 70억원 정도의 生産費用 상승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鐵鋼企業의 1989년도 利潤 70%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철강의 計劃外 價格도 계속된 최고상한가 실시와 투자수요의 진정으로 하락하게 되어 計劃外 철강의 판매수익 분으로 計劃內 價格 판매로 인한 손실 분을 충당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鐵鋼企業이 적자 누적의 문제를 안게 되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中央當局은 철강 관련 제품의 計劃內 價格을 인상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生産財의 計劃外 공장도가격 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해 주요 원자재 및 生産財에 대한 최고상한가 제도는 계속해서 강화, 실시되었다⁶²⁾. 각

60) [國家物價局, 物資部, 冶金工業部, 中國有色金屬工業總公司關於堅決貫徹執行計劃外黑色, 有色金屬, 全國統一最高限價的通知], (678號 文件), 1989. 9. 23

61) 計劃內 石油價格, 石炭價格, 電力價格의 지역별 품목별 자세한 인상조정 內容은 ([中國物價年鑑 1991] 1992. p. 37-39) 참조.

62) 각종 철,비금속 관련 계획의 생산제품들에 대한 최고상한가 제도는 1989년에

중 철, 비금속 관련 計劃外 生産製品들에 대한 최고상한가 제도는 1989년에 강화된 조치를 그대로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1990년에는 計劃外 石炭價格에는 最高上限價를 統一分配石炭炭鑛과 地方 國營 石炭광의 計劃外 石炭 공장도가격은 최고 공장도 상한가를 각각 실행하였으며 石炭市場의 소매가격은 최고 소매가격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調整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工產品價格 총액이 약526억 원으로서 1989년의 225억 원에 비해 두배 이상 인상 調整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工產品 價格調整이 추진된 1980년대이래 가장 큰 폭의 調整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1년에도 308억 원의 工產品價格의 인상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調整된 工產品價格의 대부분은 國家固定價格으로서 雙軌制 상의 生産財 計劃內 價格을 의미한다. 즉 1990년에 調整된 工產品 價格 총액 중 88%인 466억 원은 國家 固定價格부분임을 알 수 있다. (< 표 IV-4 > 참조)

< 표 IV-4 > 價格종류별 工產品 工場價 調整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단위: 억 원

	1988	1989	1990	1991
공산품조정총액				
상향조정	288.1	228.86	538.51	315.47
하향조정	0.01	3.21	12.15	6.61
조정총액	288.18	255.64	526.35	308.86
국가고정가격				
상향조정	238.26	198.89	478.67	303.81
하향조정	0.01	2.25	11.82	5.80
조정총액	238.25	196.64	466.84	297.98
국가지도가격				
상향조정	49.92	29.97	59.84	11.65
하향조정	-	0.96	0.33	0.77
조정총액	49.92	29.00	59.51	10.88

자료: [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참조

강화된 조치를 그대로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1990년에는 계획외 석탄가격에는 최고상한가를 통일분배 석탄광과 지방 국영 석탄광의 계획외 석탄 공장도가격은 최고 공장도 상한가를 각각 실행하였으며 석탄시장의 소매가격은 최고소매가격을 실시하였다.[中國物價年鑑1990,1991](p.39-40)

國家指導價格의 調整도 59억 원이나 인상 調整되어 연도별 調整額을 비교해볼 때 가장 큰 폭의 價格調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 추세는 1991년에도 계속되었다. 1991년에는 計劃內 價格의 큰 폭의 調整뿐만 아니라 價格改革도 가장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中央의 價格管理의 調整뿐만 아니라 價格改革도 가장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中央의 價格 관리권한이 대폭 지방 성시로 이관되었으며 統一管理物資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축소되었다. 石炭, 原油, 鋼材, 電力, 非鐵金屬 등 중요 物資의 공장도가격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鐵道 및 각종 交通運輸 요금도 현실화되었다. (< 표 IV-5 > 참조) 計劃內 價格의 인상폭과 範圍는 價格改革이 추진된 이래 최대의 규모였다.

< 표 IV-5 > 공산품 공장도가격 조정액

단위: 억원

	1988	1989	1990	1991
연료 및 동력	-	72.21	61.62	89.00
철야금공업	-	7.90	17.07	44.76
비철금속공업	-	1.58	14.46	10.15
화학공업	-	7.45	24.88	9.36
건축재료공업	-	6.54	5.49	14.86
기계전기전자공업	-	2.26	2.60	1.27
경방직업	-	65.44	43.68	9.50
교통운수업	-	11.28	60.18	15.18
농업관련생산재	-	22.56	1.44	2.88
기타	-	28.43	57.86	4.74
합계	288.17	225.65	289.33	201.75

자료: [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참조.

價格관리 부문별공산품 工場價格 調整額을 보면 < 표 IV-6 > 에서와 같다.

< 표 IV-6 > 價格관리 부문별 工產品 공장도가격 調整額

단위: 억원

	1988	1989	1990
국가 고정 가격			
상향 조정	46.9	198.8	478.6
하향 조정	0.0	2.2	11.8
조정 총액	46.9	196.6	466.8
국무원관리가격			
상향 조정	22.8	121.4	366.2
하향 조정	0.0	0.9	7.6
조정 총액	22.8	120.5	328.5
지방 관리 가격			
상향 조정	24.1	77.4	142.3
하향 조정	0.0	1.3	4.1
조정 총액	24.1	76.1	138.2

자료: [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참조.

1990년에는 國家固定價格에 대한 調整總額이 466억 원 상당으로 이중 478억 원은 上向 調整된 價格 분이다. 國務院 관리價格은 328억 원이며 地方관리價格은 138억 원으로서 國家固定價格의 調整金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家固定價格이나 國務院 관리價格의 1990년 上向調整 총액이 1988년과 1989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된 것은 1988년과 1989년 상반기에 걸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生産財의 價格內外 價格차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에 이용 축소하기 위하여 計劃內 製品의 價格이 대폭 상향 調整된 때문이다. 이러한 計劃內 製品 價格의 上向調整은 1992년까지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표IV-7> 주요 물자의 판매가격 상승률(1992년)

단위:%

	전년말대비			전년동기대비		
	종합	계획내	계획외	종합	계획내	계획외
총 지 수	10.5	11.7	10.2	13.4	13.5	13.1
철관련 금속제품	16.7	12.8	18.1	19.8	19.2	20.0
그중: 생 철	5.3	5.8	5.1	3.3	1.7	3.9
강 재	17.3	13.2	18.8	20.7	20.2	20.8
비 철금속 제품	5.7	8.1	5.3	5.0	5.3	5.0
그중: 동	6.0	10.7	5.2	8.0	8.8	7.8
알루미늄	12.8	7.5	15.9	8.1	4.0	10.6
납	0.3	-1.5	0.8	-3.9	-1.6	-4.6
아 연	2.5	5.0	2.0	0.2	2.3	-0.3
주 석	13.5	12.7	13.6	10.4	8.3	10.7
연 료 제 품	11.0	19.8	5.0	8.9	16.9	3.5
그중: 석탄	11.0	19.8	5.0	8.9	16.9	3.5
건 축 재 료	13.9	7.9	16.4	20.1	19.7	20.3
그중: 시멘트	12.0	7.7	14.3	19.9	20.6	19.6
목재및관련제품	12.2	12.5	12.2	10.8	7.8	11.3
그중: 원목	16.1	12.9	16.7	12.5	9.3	13.1
화 공 제 품	-2.7	-0.8	-3.3	-1.4	-0.7	-1.7
그중: 가성소다	-2.8	-5.5	-1.1	-3.8	-6.0	-2.5
소 다	1.8	-0.6	3.4	-1.6	-3.3	-0.4
플라스틱	-4.1	0.7	-5.3	-2.9	2.7	-4.3
고압폴리염화비닐	1.1	11.7	-5.8	1.5	9.5	-3.8
저압폴리염화비닐	-3.2	-3.7	-3.0	1.1	4.9	-0.8
폴리프로필렌	-9.7	-1.8	-14.6	-9.0	8.5	-18.3
기계전자제품	9.1	12.6	8.0	16.9	16.4	16.6
그중: 중형트럭	13.4	19.2	12.3	19.5	20.0	19.3
소형승용차	2.1	-1.6	2.7	11.9	5.9	13.0

자료: 中國物資信息中心市場物價處 提供

그 결과 1992년에 이르러서는 計劃內外 製品의 價格차이가 거의 해소되었다.

이는 1992년의 전년동기대비 계획내외 주요 물자 가격상승률이 각각 13.1%와 13.5%로서 가격상승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표 IV-7 >참조)

이러한 결과는 이미 1991년까지의 기간을 中心으로 분석된 計劃內外 價格차의 축소 과정 (<표IV-8>참조)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 표 IV-8 > 주요 生産財 計劃內外 공장도가격차 추이

단위:원

	1987	1988	1989	1990	1991
석탄	122.9	178.2	26.31	181.6	123.0
		(55.3)	(84.9)	(-81.5)	(-58.6)
원유	357.1	346.0	261.6	202.3	168.8
		(-11.1)	(-84.4)	(-59.3)	(-33.5)
휘발유	62.8	56.6	71.3	63.6	42.9
		(-16.2)	(14.7)	(-7.7)	(-20.7)
증유	159.2	144.4	170.4	163.4	95.1
		(-14.8)	(26.0)	(-7.0)	(-68.3)
강재	66.6	57.0	73.5	50.5	19.4
		(-9.6)	(16.5)	(-23.0)	(-31.1)
주조용강철	35.8	34.6	52.9	39.8	18.9
		(-1.2)	(18.3)	(-13.1)	(-19.9)
알루미늄계	39.5	71.6	98.3	60.8	30.9
		(32.1)	(26.7)	(-37.5)	(-29.9)
전해니켈	109.0	365.0	183.4	67.1	63.6
		(255.0)	(-181.6)	(-116.4)	(-3.5)
전해동	4.0	48.9	112.1	122.4	70.1
		(44.9)	(63.2)	(10.3)	(-52.3)
소다	66.7	233.3	68.0	16.7	4.0
		(166.6)	(-165.3)	(-51.3)	(-13.3)
가성소다	294.7	435.1	52.8	16.7	10.4
		(140.4)	(-382.3)	(-36.1)	(-6.3)
425시멘트	35.0	30.4	41.3	29.3	0.0
		(-4.6)	(10.9)	(-12.0)	(-29.3)
목재	145.9	175.3	199.7	87.1	82.3
		(29.4)	(24.4)	(-112.6)	(-4.8)

참고: ()는 전년동기대비 계획내외 平均價格의 차이를 계산한 것임

* 는 1991년 상반기 기준.

4. 雙軌價格의 變動 推移

雙軌價格 제도와 관련되어 中國의 工產品 價格政策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됨으로써 雙軌價格 또한 이러한 政策변수 등에 의하여 변동하게 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生産財의 雙軌價格은 확대와 축소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中國 經濟의 과열과 긴축 상황이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經濟가 과열되었을 경우 雙軌價格의 차이가 확대되다가 강력한 緊縮經濟가 실행되어 수요가 억제되고 計劃外 價格에 대한 최고상한가의 실시와 같은 價格統制가 실시되며 동시에 計劃內 價格이 上向 調整될 경우 동 價格差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雙軌價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經濟가 과열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1989년까지는 生産財 計劃內外 공장도가격의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 (< 표 IV-8 > 참조) 즉 주요 生産財 1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988년의 計劃內外 價格차이는 1987년에 비해 7개 품목이 확대된 데 비해 1989년의 경우는 1988년에 비해 9개 품목에서 價格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의 경우를 1987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11개 품목에 달해 동기간에 計劃內外 價格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력한 緊縮經濟와 計劃外 價格에 대한 上限價格制, 計劃內 價格의 上向 調整이 추진된 1990년부터 1991년까지를 보면 同價格差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반진된 것을 보여준다.

計劃內外 價格 차이의 변화과정을 보면 中國의 雙軌制 改革과 中國의 經濟 改革추진의 정도 사이에는 커다란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生産財의 計劃內外 價格差가 크게 확대된 1987-1989년 기간은 經濟改革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그 폭이 컸던 해로 公業 經濟成長이 매우 빠르고 투자와 통화량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中國 經濟 전반에

걸쳐 生産財의 초과수요가 발생됨으로써 生産財의 市場價格을 포함한 計劃外 價格은 수요공급의 불균형 심화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 또한 價格 決定 권한의 분권화를 포함한 經濟改革의 폭 넓은 추진은 計劃外 價格의 폭등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市場價格과 計劃外 價格이 폭등하는 상황하에서는 計劃內 價格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價格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計劃價格을 調整할 경우는 中國 經濟 전반에 높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計劃內 價格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二重價格制를 통한 生産財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1990년에 들어오면서 강력한 긴축정책이 실시되었으며 80년대 중반부터 광범위하게 분권화 되어 오던 價格 決定 권한과 價格관리 기능은 잠정적으로 中央으로 회수되었다. 그 결과 통화량도 총수요를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환수되었으며 공업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수요가 공급 가능 수준에서 진정되었으며 이러한 經濟환경을 기초로 하여 計劃內 價格의 市場價格 수준으로의 上向調整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計劃內外 價格 차이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5. 雙軌制의 실시 성과와 意義

雙軌制의 실시는 生産財의 市場價格 전환에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雙軌制가 실시되는 기간을 통하여 다수의 주요 생산재의 計劃價格이 市場價格으로 전환되었다. 1992년에 이르러 生産財의 計劃內外 가격상승률의 거의 같은 수준에 접근함으로써 計劃經濟하에서 과소 평가되어있던 生産財의 計劃價格이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市場價格으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生産財 市場價格 전환에 결정적인 뒷받침이 된 雙軌制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市場價格과 計劃價格을 공존시킴으로써 生産財의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는 데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計劃價格의 결정 당국은 市場價格의 정보를 이용하여 生産財의 計劃價格을 上向調整함으로써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市場價格과 計劃價格을 공존시킴으로써 기업의 市場機構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업들은 市場價格과 計劃價格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市場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영의 效率性を 습득하였다. 셋째, 기업들로 하여금 市場에서 판매될 수 있는 製品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生産製品의 품질 向上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二重價格制를 도입하여 生産財의 計劃價格을 需要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二重價格制가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總供給과 總需要의 均衡이 維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中國의 경우 雙軌制의 도입 과정에서 강도 높은 經濟改革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되어 生産財의 計劃外 價格이 폭등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 점은 二重價格制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총 수요와 총 공급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市場價格의 도입 정도와 경쟁을 기초로 하는 市場의 發展 速度가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市場價格의 도입 정도에 비하여 市場의 發展 速度가 느릴 경우 流通體制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市場秩序와 혼란을 가져 와서 二重價格制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雙軌制의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上限價格制 등을 통하여 이를 조기에 수습한 것은 中國의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던 장점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二重價格制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計劃當局의 巨視經濟 調節能力이 유지되어야 한다. 二重價格制는 기업 생산의 자극을 통한 초과수요에의 대응, 에너지 절약과 경영의 효율성 촉진, 經濟改革에 따르는 위험성 방지, 시장을 매개로 한 기업과 경영의 효율성 촉진, 經濟改革에 따르는 위험성 방지, 시장을 매개로 한 기업과 명령기구의 再調整 역할 담당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 계획수행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二重價格制의 양면성으로 말미암아 市場價格의 도입에 대한 速度와 範圍의 조절이 필요하다.

中國에서의 生産財에 대한 二重價格制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추진됨으로써 二重價格制 하의 양면성이 첨예화되어 나타났다. 이 경우 中國의 계획당국처럼 발생된 문제점을 上限價格制의 실시와 같은 행정적 수단 등을 통해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 때에는 二重價格制 도입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폭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 계획당국의 巨視經濟 통제 능력이 부족할 경우 二重價格制의 단점이 극대화됨으로써 동 제도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것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6. 工產品 價格改革의 방향 전환

中國의 價格改革은 1992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전환을 보여준다. 등소평이 남쪽지방을 순방하면서 改革開放 속도와 폭, 方法 등에 대해서 언급(南巡談話)함에 따라 中國의 經濟改革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經濟改革의 전체적인 방향은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확립과 市場價格을 中心으로 經濟政策이 이루어지는 巨視經濟 管理體制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⁶³⁾. 國家는 독과점 적인 商品과 사회 안정과 장기발전에 필수적인

소수의 商品 그리고 노동력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대부분의 商品價格은 市場에 의해서 決定되도록 자유화시킨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價格改革의 방침은 지금까지 실행되어오던 ‘調整’과‘開放’의 조화와 반복이라는 價格改革의 方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放’을 위주로 하는 (以放爲主)價格改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이는 價格改革과 일반적인 經濟改革의 관계에서 經濟改革은 價格改革의 추진 정도에 상응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價格改革의 전환에 따라 이전의 計劃內 부분으로 관리되던 상당수의 원자재, 에너지, 重工業 제품들의 價格이 자유화되었다. 中央當局은 1986년에 공포했던《國務院有關部門分工管理價格的重工產品目錄》을 수정하여 中央의 一級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商品 중 22개 품목을 省과 自治區, 直轄市 物資 관리 機構로 이관하였으며 571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市場에 따라 價格을 決定할 수 있도록 자유화시켰다. 결국 수정된 목록에서는 89개 품목만이 中央이 관리하는 日給관리 대상 품목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실시되어 오던 각종 計劃外 生産財의 전국 통일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에 적용 되었던 최고상한가 제도도 폐지되었다. 즉 計劃外 원유, 석유제품, 강재, 동, 아연, 주석, 알루미늄 등 원자재와 각종 화공제품 등에 적용되었던 計劃外 生産製品에 대한 全國 統一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의 최고상한가 제도가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價格改革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價格管理 體制를 計劃價格이나 指導價格으로부터 市場價格 위주로 전환시키며 市場을 발달시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 아래 40여종에 이르는 주요 化工製品의 價格이 市場의 수급관계에 의

63) 1992년에 개최된 第14次 全人大의 대표 연설에서는 공식적으로 價格改革이 시장육성과 經濟體制改革의 관건이며 市場機構를 中心으로 價格改革을 추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全人大政治工作報告에서는 經濟體制改革의 중점은 企業改革이며 價格改革이 企業改革의 전제 조건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市場經濟를 수립, 발전시키는 중간 연결의 핵심고리는 價格임을 주장하였다. (第14次 全人大5次會議政治工作報告).

해서 決定될 수 있도록 자유화되었다. 이러한 重工業 製品과 관련된 價格改革의 추세는 주요 기계제품, 전기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그대로 실행되었다.

中國 中央政府는 물가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消費財 商品에 포함된 輕工業 製品 價格도 대폭 자유화시켰다. 이는 價格改革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그 폭을 더욱 넓힌다는 1992년의 새로운 價格改革 추진 전략의 채택으로 인하여 추가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國家物價局과 國家유관 부문이 나누어서 관리하는 경공업 제품은 공업소비품 3개 품목과 輕紡, 原材料 6개 품목으로 한정되고 컬러 TV, 세탁기 등 6개 품목과 기타 주요 공업소비품 26개 품목은 市場需給에 따라서 價格이 決定되었다.

國家指導價格의 적용을 받는 일부 生産財 품목에 대해서는 상하 변동 범위가 정해진 不同價格制가 실시되었다. 무수알콜(純酒精) 등과 같은 화공제품은 計劃內外 價格의 적용을 받는 雙軌制와 不同價格의 적용을 받는 指導價格制가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국방 및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鋼材, 鐵, 石 등은 國家指導價格의 형식 아래 不同價格의 범위 하에서 價格이 책정되었다.

價格改革의 전환과 中央 관리 대상 품목의 대폭 감소로 價格管理 권한의 상당부분이 地方 省, 市, 自治區 혹은 個別企業 차원으로 이관되었다. 철강제품의 경우 國家가 관리하는 鐵鋼製品 價格은 44개 종류에서 12개 종류로 감소됨으로써 대부분의 철강 품목은 寶山鋼鐵 등의 生産企業에 의해 國家指導價格 하에서 不同價格으로 價格이 決定되었으며 일부는 自治區, 直轄市에서 價格이 決定되고 나머지는 市場의 需給에 따라 價格이 決定되었다.

1992년 價格改革은 中國의 價格 決定 메커니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國家固定價格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던 生産財의 비중이 1990년 44.6% 수준에서 1992년에는 18.6%로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國家指導價格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던 生産財의 비중도 1990년 19%에서 1992년 7.5%로 감소되었다. 반면 市場價格에 의해 決定되는 生産財 비중은 1990년 36.4%에

서 1992년 73.8%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어 社會主義 計劃 經濟적인 성격을 가장 특징적으로 규정해 온 生産財 부문에 있어서 計劃價格의 대부분이 市場價格으로 대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V-3〉참조)

이러한 1992년 價格改革 추진 성과는 1990년과 1991년의 다양한 조치들로 인한 物價安定, 計劃外 價格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計劃內 價格의 점진적 上向調整, 計劃內外 價格 차이의 축소, 투자수요의 억제와 공급의 안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經濟秩序 회복과 經濟環境의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1992년에 추진된 市場價格 中心의 본격적인 價格改革에 필요한 제반 經濟環境 조성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2년의 價格改革 기조는 1993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市場機構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도록 추진된 價格改革이 1992년에 방향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3년 이후 최근까지의 價格改革은 크게 보면 1992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즉 國家固定價格 부문으로 남아 있는 품목의 수를 줄이고 市場機構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는 품목을 증가시키는 價格改革이 계속 되었으며 國家固定價格 관리 대상 품목 중 이것의 생산에 필요한 가격의 상승함으로써 동제품 생산 기업의 경영상에 손실이 발생되거나 원래부터 價格이 낮게 책정되어 中國의 價格構造에 문제가 되어 온 제품의 價格은 政府에 의해 上向 調整되는 것과 같은 價格改革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價格改革의 내용과 方法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

1993년 말에 市場機構에 의해서 價格이 決定되는 비중이 消費財 93.8%, 生産財 81.1%, 農副產品 87.5%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급속히 형성된 市場秩序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市場機構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中國 政府는 최초로 市場機構와 관련되어 부정당한 方法을 통해 市場의 競爭 기능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⁶⁴⁾.

V. 價格管理體制改革的 성과

1.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 추이

價格體系改革으로부터 價格管理體制改革으로의 價格改革의 방향전환은 각 부문별로 추진되어 오던 價格改革의 方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즉 價格體系改革이 中心적으로 주장되던 시기에 있어서 價格改革은 각 産業 부문별 商品의 특징에 따라 추진 方法을 달리해 왔다. 즉 市場需給의 불균형이 심각한 제품이나 經濟 전반에 걸쳐 영향이 큰 基礎商品 및 주요 生産財는 計劃價格을 中心으로 하고, 市場수급이 안정되어 있고 市場수요에 민감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國家指導價格이나 市場價格을 위주로 하는 價格改革을 추진해 왔다. 生産財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에너지나 核心礦產品, 중요한 中間財는 國家計劃價格을 주로 적용하고 市場수요에 비교적 민감한 最終財는 市場價格을 실시하는 政策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價格改革의 方法은 價格管理體制改革 위주로 價格改革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즉 각 産業 부문별 商品의 특징이나 市場狀況에 관계없이 市場價格을 위주로 價格改革을 추진하는 價格管理體制改革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價格改革의 목표는 모든 産業별 生産製品 價格이 市場에 의해 決定되도록 하는데 두어졌다. 이러한 價格改革의 전환에 따라 90년대 초부터는 전국적으로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에 대한 決定 비중을 中央에 통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내부 지침이 中央의 計劃當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價格體系改革에서 價格管理體制改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크게 두 단계

64)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부당경쟁법」(1993년 9월 2일 제8차 전인대상무위원회 3차회의에서 통과) 참조법안은 4장 3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사례와 이에 대한 감독 조사법률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雙軌制가 실시되고 이 과정에서 市場秩序 혼란과 인플레이션이 발생됨으로써 經濟秩序 회복과 經濟環境 조성이라는 명분 하에 緊縮政策이 실시되고 中央 計劃經濟로의 회귀가 강조되던 시기이다. 同時期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經濟秩序 회복을 위하여 강력한 緊縮政策과 中央 統制式 經濟운영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價格改革 측면에서 볼 때 市場價格을 위주로 하는 價格改革이 그 이전에 비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雙軌制의 실시로 인하여 計劃價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당수의 計劃商品들이 이미 市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거나 인플레이션의 발생 과정에서 이미 상당수의 計劃商品들의 價格이 市場의 수급조건에 의해 현실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緊縮政策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미 市場의 수급조건에 의해 현실화되어 있는 計劃商品들의 價格은 같은價格수준에서 그대로 자유화시킬 경우에도 經濟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 따라서 市場價格을 中心으로 하는 價格改革이 추진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등소평이 1992년 5월 광둥 등 남쪽지방을 시찰하면서 經濟改革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그 추진 폭을 확대하라는 주장을 편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들 수 있다. 이 단계는 緊縮政策하의 안정된 물가와 회복된 經濟질서를 바탕으로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이다.

다음에는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을 中心으로 하는 商品別 三種價格의 決定 비중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價格管理體制 改革의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한다.

가. 商品別 市場價格 범위의 확대

市場價格을 爲主로 하는 價格管理體制 改革의 추진성과는 商品별로 國家 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

다 명확해진다. 먼저 農副產品의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의 價格決定 비중 추이를 보면 < 표 V-1 > 에서 보는 바와 같다.

國家固定價格의 경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강력한 物價抑制 政策이 추진되던 1989년을 제외하고는 1985년 37%에서 1990년 25% 수준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이러한 추세는 1991년에도 계속되다가 전반적인 經濟改革의 속도가 빨라지고 농부산품의 市場價格으로의 자유화가 급속히 추진된 1992년에 國家固定價格의 비중이 12.5% 수준으로 급감하다가 1996년에 16.9%로 인상되었다.

< 표 V-1 > 연도별 農副產品 市場價格의 決定 비중 추이
단위:%

연 도	국가고정가격	국가지도가격	시장가격
1985	37.0	23.0	40.0
1986	35.3	21.0	43.7
1987	29.4	16.8	53.8
1988	24.0	19.0	57.0
1989	35.3	24.3	40.4
1990	25.0	23.4	51.6
1991	22.2	20.0	57.8
1992	12.5	5.7	81.8
1993	10.4	2.1	87.5
1994	16.6	4.1	79.3
1995	17.0	4.4	78.6
1996	16.9	4.1	79.0

자료: [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이용 .

國家指導價格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즉 1985년 23% 수준이던 國家指導價格의 비중이 1990년 23.4% 수준으로 유지됨으로써 80년대 후반기에는 指導價格 中心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農副產品의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는 중간과정으로서의 國家指導價格의 역할이 農副產品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이 늦어짐으로 인해 지속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추세도 1992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게 되어 1992년에는 同比重이 5.7% 수준으로 급속히 감소되었고 1993년에는 2.1% 수준에 그쳐 農副產品 價格決定에 있어서 國家指導價格의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94년부터 4.1% 수준에서 1995년 4.4%, 1996년 4.1% 수준에서 온정 되어 있다. 이는 中央의 통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農副產品만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의 農副產品 價格이 市場 수급에 의해서 決定되었기 때문이다. 農副產品에 대한 市場價格의 決定비중을 보면 1985년 40.0%, 1990년 51.6% 수준으로 80년대 후반기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1987년과 1988년에는 각각 53.8% 및 57.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물가폭등에 따른 經濟改革의 후퇴와 함께 1989년에는 이 비중이 40.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中央 計劃당국에 의한 經濟운영에도 불구하고 經濟질서의 회복과 함께 다시 農副產品의 市場價格에 의해 決定되는 비중이 81.8%에 도달함으로써 農副產品 價格의 대부분이 市場의 수급에 의해서 決定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연도별 소매상품에 대한 三種價格의 決定 비중 추이를 보면 <표 V-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소매상품의 경우 國家固定價格에 의해서 決定되는 비중은 1985년 47% 수준에서 1990년 29.8%로 줄어들어 80년대 후반기에 計劃價格으로 決定되던 소매상품의 수가 크게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價格改革이 큰 폭으로 추진되던 1986년 전년대비 약 12% 정도 고정價格의 비중이 감소되었고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經濟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한 강력한 긴축政策과 中央 計劃經濟가 강화되던 1990년에 다시 固定價格 決定비중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 추세는 등소평의 南巡講話(1992년 광둥 시찰시 한 강

화)가 있었던 1992년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國家固定價格의 비중이 5.9%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후 1994년부터1996년까지는 비교적 溫步하게 6.3%로 감소되었다.

< 표 V-2 > 연도별 零售商品 市場價格의 決定 비중 추이

단위: %

연 도	국가고정가격	국가지도가격	시장가격
1985	47.0	19.0	34.0
1986	35.0	25.0	40.0
1987	33.7	28.0	38.3
1988	28.9	21.8	49.3
1989	31.3	23.2	45.5
1990	29.8	17.2	53.0
1991	20.9	10.3	68.8
1992	5.9	1.1	93.0
1993	4.8	1.4	93.8
1994	7.2	2.4	90.4
1995	8.8	2.4	88.8
1996	6.3	1.2	92.5

자료: [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이용.

國家指導價格의 범위는 1985년 19%에서 1987년 28%로 높아졌다가 1990년에는 다시 17.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기간 동안 不同價格을 연결 고리로 하여 固定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자고 하는 價格改革 政策이 상당히 중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中央統制가 강화되던 90년대 초반부터 國家指導 價格 범위는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을 전환점으로 이價格 범위는 1.1% 수준으로 급감함으로써 소매상품에 있어서 國家指導價格의 의미는 거의 없어졌다.

國家固定價格이나 指導價格과는 달리 市場價格에 의해 決定되는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1985년 34% 수준이었던 市場價格의 決定 비중은 1990년 53%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기간 중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인하여 緊縮政策이 추진되었던 1987년과 1989년은 市場價格의 決定 비중이 적은 쪽으로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에는 市場價格 決定 비중이 92.5%수준에 도달함으로써 소매상품의 경우는 거의 市場의 수급에 의해서 價格이 決定되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生産財의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의 決定 비중 추이를 보면 <표 V-3> 에서와 같다. 生産財 관련 三種價格의 비중은 1990년부터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80년대 후반의 生産財에 대한 三種價格의 비중 추이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 표 V-3 > 연도별 生産財 市場價格 決定 비중 추이

단위: %

연 도	국가고정가격	국가지도가격	시장가격
1990	44.6	19.0	36.4
1991	36.0	18.3	45.7
1992	18.7	7.5	73.8
1993	13.8	5.1	81.1
1994	14.7	5.3	80.0
1995	15.6	6.5	77.9
1996	14.0	4.9	81.1

자료: [中國物價年鑑] 참조

生産財에 대한 國家固定價格의 비중을 보면 1990년에 44.6% 수준으로 소매상품이나 農副產品의 國家固定價格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生産財가 中國의 計劃經濟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市場價格을 中心으로 하는 價格改革의 추진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물가상승 억제와 經濟秩序 회복이라는 명분 위에서 추진된 中央 計劃當局에 의한 經濟運營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生産財와 관련된 價格改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91년에는 同比重이 36.0% 수준으로 낮아지고 1992년에는 다시 18.7%로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1993년에는 13.8%, 1994년에는 14.7%, 1995년에는 15.6%, 1996년에는 14.0%로써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國家指導價格에 의한 生産財 價格決定 비중을 보면 1990년에 19.0% 수준으로 農副產品이나 소매상품에 있어서의 指導價格 決定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同比重은 1991년에도 18.3%로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다가 1992년을 기점으로 7.5% 수준까지 급속히 낮아지고 1993년에는 5.1%, 1996년에는 4.9%까지 낮아져 生産財에 대한 國家指導價格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生産財에 대한 市場價格의 決定 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높아졌다. 同比重은 1990년 36.4% 수준으로 農副產品이나 소매상품의 그것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1991년 45.7% 수준으로 제고되고 1992년에는 73.8% 수준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同優勢는 계속되어 市場價格의 決定 비중이 1993년 81.1%, 1994년 80.0%, 1995년 77.9%, 1996년 81.1% 수준에 도달하여 生産財와 관련하여서도 市場機構가 計劃機構를 대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순조롭게 市場價格에 의해서 決定되는 生産財 價格의 비중이 증가된 것은 80년대 후반에 추진된 雙軌制의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미 雙軌制를 통하여 生産財의 상당부분이 市場價格 수준으로 전환시켜도 크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적었다. 실제적으로 生産財와 관련하여 1992년 計劃價格의 상승률이 市場價格의 상승률을 미미한 정도로 상회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1993년 말부터 현재까지 각 商品별 市場價格의 決定 비

중이 農副產品 79.0%, 零售商品 92.5%, 生産財 81.1% 수준에 달해 대부분 計劃價格이 市場價格에 의해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추진된 市場價格을 위주로 하는 價格管理體制改革이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80년대 전 후반에 걸쳐서 商品별 특성에 따라 특색 있는 價格改革方法을 적용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던 각종 價格改革의 성과를 바탕으로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지역별 市場價格 범위의 확대

앞에서는 商品별로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이 차지하는 비중추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農副產品, 零售商品 (소매상품), 生産財와 관련된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이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나타내며 추진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먼저 農副產品에 대한 三種價格 決定 비중의 내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V-4>에서와 같다.

國家固定價格의 決定 비중을 보면 1991년의 경우 北京 5.0%, 上海 8.5%, 福建 6.3%, 廣東 5.6% 수준으로 전국 평균 22.2%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들 도시 및 지역이 對外開放 정도가 크거나 실험적인 대도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하여 河北, 黑龍江, 江蘇, 安徽, 山東, 河南, 四川 등의 農副產品 주요 生産地域과 對外開放의 정도가 매우 낮은 云南, 新疆 등의 지역은 固定價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미 農副產品에 대한 固定價格의 價格決定 비중이 크게 낮은 北京 등의 지역이외에도 1992년 들어오면서 浙江 1.9%, 湖南 6.3%, 廣西 6.5%, 四川 7.9%, 青海 3.3% 등 固定價格 決定 비중을 크게 낮추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1993년에는 河南, 吉林, 黑龍江, 江蘇, 安徽, 河南, 湖北, 云南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固定價格 決定 비중이 10% 수준 미만으로 낮아짐으로써 中國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農副產品에 대한 固定價格의 역할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V-4> 지역별 三種價格 農副產品 가격결정 비중

단위: 원

地區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全國平均	22.2	12.5	10.4	20.0	5.7	2.1	57.8	81.8	87.5
北京	5.0	10.0	5.0	27.0	0.0		68.0	90.0	95.0
天津	18.8	14.1	8.0	19.2	0.0		62.0	85.9	92.0
河北	33.1	19.0	14.5	6.7	1.6		60.2	79.4	85.5
山西	19.0	15.5	7.3	36.7	3.7	1.2	44.7	80.8	91.5
遼寧	17.6	10.3	3.4	12.5	1.7		66.9	88.0	96.6
吉林	19.6	16.0	14.1	29.9	15.0	2.2	50.5	69.0	83.7
黑龍江	32.6	14.3	18.3	17.0	2.8	3.0	50.4	82.9	78.7
上海	8.5	5.1	4.2	28.4	3.7		63.1	91.2	95.8
江蘇	27.8	22.1	18.2	16.7	5.4	0.4	56.2	72.5	81.4
浙江	19.0	1.9	8.0	12.6	9.3	5.4	68.4	88.8	86.6
安徽	27.2	16.4	10.8	17.8	7.5	0.1	55.0	76.1	89.1
福建	6.3	5.8	0.8	19.4	11.9	8.5	74.3	82.3	90.7
江西	21.4	16.8	7.2	19.4	4.0	2.2	59.2	79.2	90.6
山東	29.1	13.8	7.5	6.4	0.1	0.2	64.5	86.1	92.3
河南	34.2	19.0	26.9	32.1	1.6		33.7	79.4	73.1
湖北	19.7	22.1	12.8	14.8	1.9	2.8	65.5	76.1	89.1
湖南	17.9	6.3	7.5	6.9	0.7		75.2	93.0	92.5
廣東	5.6	1.3		29.4	0.0		65.0	98.8	
廣西	22.0	6.5		6.3	19.2		70.9	74.3	
海南					26.0			74.0	97.4
四川	23.2	7.9	7.9	25.6	11.5	11.5	51.2	80.6	80.6
貴州	25.8	15.5		9.3	12.7	9.1	64.9	71.8	
雲南	45.8	28.5	18.3	17.1	18.8		37.1	52.7	72.6
陝西	17.4	13.8	8.3	10.9	0.1		71.7	86.1	91.7
甘肅	16.5	11.9	9.3	15.4	4.1	2.6	68.1	84.0	88.1
寧夏	18.5	14.7	4.3	32.0	5.6	0.9	49.5	79.7	94.8
青海	10.1	3.3	8.4	20.1	1.3	3.3	69.8	95.4	88.3
新疆	44.8	21.1		15.6	13.3		39.5	65.6	

자료: [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이용.

國家指導價格의 決定비중을 보면 國家固定價格의 決定 비중이 매우 낮았던 北京, 上海, 福建, 廣東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農副產品에 대한 國家指導價格의 決定비중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91년의 경우 國家指導價格決定 비중은 北京 27.0%, 上海 28.4%, 福建 광동 29.4%로서 전국 평균 20.0%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開放의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부터 農副產品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되 중간 연결 수단으로서 國家指導價格을 사용하고자 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農副產品에 대한 國家固定價格의 決定단위를 보면 전국적으로 省級보다는 中央에서 決定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國家指導價格은 일정 범위 내에서의 자유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生産제품이 완충장치 없이 곧 바로 市場機構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市場機構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도 國家指導價格이 지니는 장점이다. 國家固定價格의 決定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나 도시에 있어서 國家指導價格 決定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國家指導價格의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國家指導價格의 決定비중은 1992년에 모든 지역에 걸쳐서 급격히 낮아지고 1993년에는 복건, 사천, 귀주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國家指導價格의 決定 단위는 지역별로 볼 때 省級的 비중이 中央의 비중보다 더 큰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는 國家指導價格의 적용을 받는 農副產品의 경우 中央보다는 省級에서 指導價格을 決定하는 것이 지역 실정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市場價格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北京, 上海, 遼寧, 浙江, 福建, 湖北, 湖南, 廣東, 廣西, 陝西, 青海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도시나 지역들의 市場價格 비중은 1992년 거의 90%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특히 上海, 湖南, 廣東, 青海 지역은 90%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광동의 경우는 市場價格으로 決定되는 비중이 98.7%에 이르러 거

의 모든 農副產品의 價格이 완전히 市場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매상품에 대한 지역별 三種價格의 決定 비중 추이는 <표 V-5>와 같다.

< 표 V-5 > 지역별 三種價格 소매상품 價格 決定 비중

단위: 원

지구	국가고정가격			국가지도가격			시장가격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전국평균	20.9	5.9	4.8	10.3	1.1	1.4	68.8	93.0	93.8
북경	13.4	7.0	5.0	12.2	3.0		74.4	90.0	95.0
천진	26.3	16.1	5.3	10.8	1.9		62.9	82.0	94.7
하북	21.1	3.7	3.5	13.7		0.3	65.1	96.3	96.2
산서	11.6	2.1	2.0	2.4			86.0	97.9	98.0
료닝	16.9	3.7	8.8	5.8		0.8	77.3	96.3	90.4
길림	20.3	7.0	2.6	11.4			68.3	93.0	97.4
흑룡강	33.8	10.5	9.6	5.5		0.5	60.7	89.5	89.9
상해	23.3	7.2	2.9	17.5	2.7	0.6	59.1	90.1	96.5
강소	24.2	8.7	4.6	14.0	1.1	0.5	61.7	90.2	94.9
절강	29.5	4.4	4.5	10.6	0.2	2.7	59.9	95.4	92.8
안휘	24.4	3.4	2.4	6.9		2.6	68.7	96.6	95.0
복건	8.4	4.8	1.5	5.4		4.5	86.2	95.2	94.0
강서	24.5	4.1	4.1	7.5			68.0	95.9	95.9
산둥	16.2	4.9	2.8	4.1	0.1	1.0	79.7	95.0	96.2
하남	16.4	3.7	4.4	14.6		0.5	69.0	96.3	95.1
호북	18.4	5.8	6.3	13.3	1.2	4.0	68.3	93.0	89.7
호남	17.1	3.4	4.0	8.0	0.8	0.8	74.9	95.8	95.2
광둥	17.4	5.1	2.2	0.6			82.0	94.9	97.8
광서	16.6	8.6		20.8	8.6		62.6	82.8	
해남		5.5	3.7		7.2	0.9		87.3	95.4
사천	20.8	6.3	6.3	23.4	4.5	4.5	48.6	89.2	89.2
귀주	8.0	2.0		4.0	9.0		88.0	89.0	
운남	32.8	9.5	4.8	8.1			59.1	90.5	95.2
섬서	12.6	2.1	4.0	6.3	1.0	1.6	81.0	96.9	94.4
감숙	22.0	9.9	4.9	18.4	1.0		59.5	89.1	95.1
닝하	31.3	16.1	7.6	2.9	0.1	0.3	65.8	82.8	92.1
청해	24.6	10.5		15.2	1.1	4.5	60.2	89.4	95.5
신장	37.4	11.3		6.0	2.0		56.6	86.7	

자료:[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이용

國家固定價格의 지역별 價格 決定비중은 市場化정도가 크게 진전된 福建의 경우 1991년 8.4%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반하여 市場化가 동일한 정도로 진행된 廣東의 경우는 17.4%로 나타나 지역의 특성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市場價格의 측면에서 볼 경우 福建과 廣東은 1991년에 市場價格 決定 비중이 각각 86.2%와 8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1991년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매상품의 90% 이상이 市場價格에 의해 價格이 決定되고 있어서 소매상품 관련해서는 1992년을 기점으로 市場機構가 計劃機構를 거의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매가격에 대한 三種價格의 決定 단위를 보면 1991년까지는 國家固定價格의 경우 中央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國家指導價格의 경우는 中央보다는 省級이 주로 決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2년 들어오면 서는 소매商品에 있어서의 國家指導價格의 성격이 거의 유명무실해짐에 따라서 決定 단위에 대한 특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生産財에 대한 三種價格의 지역별 價格決定 비중을 보면 <표 V-6>에서와 같다.

國家固定價格의 價格 決定 비중은 1991년의 경우 강소 31.0%, 절강 31.1%, 복건 12.1%, 광둥 9.6% 등으로 開放의 정도가 빠른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北京과 上海는 農副產品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生産財에 있어서는 國家固定價格의 價格 決定 비중이 1991년 각각 39.8% 및 53.9%로 전국 평균 36.0%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V-6 > 참조)

1992년에 들어오면 서는 東北三省의 내륙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걸쳐서 같은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 上海 지역은 여전히 동 비중이 42.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中國 計劃당국이 중시하는 철강과 같은 주요 生産財가 上海 지역에서 生産되고 있기

< 표 V-6 > 지역별 三種價格 生産財 價格 決定 비중 추이

단위:%

지구	국가고정가격			국가지도가격			시장가격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전국평균	36.0	18.7	13.8	18.3	7.5	5.1	45.7	73.8	81.1
북경	39.8	20.0	15.0	19.3			40.9	80.0	85.0
천진	41.8	10.6	10.5	24.2	4.9	2.6	34.0	84.5	86.9
하북	48.6	28.2	13.4	34.1	9.5		17.3	62.3	86.6
산서	62.8	19.1	19.2	21.9	6.7	6.9	15.3	74.2	73.9
료닝	31.0	8.9	8.4	32.2	5.1	4.2	36.8	86.0	87.4
길림	40.6	20.8	12.1	7.6	2.7	3.8	51.8	76.5	84.1
흑룡강	67.8	47.7	31.6	22.5	6.1	2.6	9.7	46.2	65.8
상해	53.9	42.8	12.4	16.8	18.4	2.3	29.3	38.8	85.3
강소	31.0	13.7	6.4	35.6	16.4	15.9	33.4	69.9	77.7
절강	31.1	11.8	8.4	27.2	4.2	2.9	41.7	84.0	88.7
안휘	40.6	12.1	9.1	33.1	8.0	3.1	26.3	79.8	87.8
북건	12.1	8.6	8.6	4.3	3.9	4.9	83.6	87.5	86.5
강서	46.1	13.3	15.3	18.6	12.2	6.3	35.3	74.5	78.4
산둥	33.7	13.6	8.7	12.6	1.9	0.9	53.7	84.6	90.4
하남	39.7	28.2	19.2	29.2	9.5	2.4	41.1	62.3	78.4
호북	35.3	21.9	13.4	21.5	9.9	3.9	43.2	68.2	82.7
호남	25.7	7.6	9.3	19.1	6.8		55.2	85.6	90.7
광둥	9.6	9.4					90.4	90.6	
광서	36.9	8.3		9.0	5.8		54.1	85.9	
해남			7.9			4.2			87.9
사천	32.9	15.1	15.1	19.9	6.8	6.8	47.1	78.1	78.1
귀주	22.8	22.8		21.0	21.0		56.1	56.2	
운남	37.3	13.7	14.2	24.1	13.3	11.4	38.6	73.0	74.4
섬서	42.4	19.7	14.7	7.8	9.9		49.8	70.4	85.3
감숙	37.5	14.0	13.9	7.8	5.2	4.1	54.7	80.8	82.0
녕하	54.4	26.7	16.0	19.7	12.4	4.2	25.9	60.9	79.8
청해	35.0	19.6	18.9	19.0	4.6	0.2	46.0	75.8	80.9
신강	52.1	29.9		8.5	14.6		39.5	55.5	

자료:[中國物價年鑑], 각년호 이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흑룡강성 지역의 固定價格 비중도 47.7%로 전국 평균치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 이유 또한 國家固定價格의 적용을 받는 원유 및 석탄 등이 흑룡강성에서 상당량 生産되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生産財에 대한 國家指導價格의 지역별 決定 비중은 별 다른 특징 없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모든 지역에 걸쳐서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서 生産財에 대한 指導價格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雙軌制 등을 통하여 이미 대부분의 生産財 製品價格이 市場의 수급에 따라 決定됨으로써 計劃價格과 市場價格의 가교 역할을 도맡아하던 중간수단으로서의 國家指導價格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市場價格의 지역별 生産財 價格 決定 비중을 보면 1991년의 경우 吉林, 福建, 山東, 湖南, 廣東, 廣西, 貴州, 甘肅 지역은 전국 평균치 45.75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福建과 廣東은 각각 83.6%와 90.4% 수준으로써 이미 生産財의 대부분이 市場機構에 의해서 價格이 決定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中國 내에서 開放의 폭이 가장 크고 開放速度도 가장 빠른 지역으로써 生産財의 價格決定에 있어서 市場機構가 計劃機構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生産財의 지역별 市場價格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上海와 黑龍江省 지역은 동 비중이 각각 46.2%와 38.8%로 여전히 전국 평균치인 73.8%을 훨씬 밑돌고 있다. 그러나 1993년에는 동지역도 市場價格 決定 비중이 각각 65.8%와 85.3%로 급격히 높아져서 대부분의 生産財 價格이 市場機構에 의해 決定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生産財에 대한 價格決定 단위를 살펴보면 國家固定價格이나 國家指導價格 모두 省級 보다는 中央의 決定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社會主義 計劃經濟와 市場經濟가 혼재하고 있는 中國 經濟의 상황에서 生産財가 지니는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國家指導價格의 決定 단위도 省級보다는 中央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生産財 價格의 中國經濟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은 전반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었다⁶⁵⁾.

첫째, 市場價格의 형성은 시장경제 하에서 희소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市場價格은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자원의 최적배분 요구와 부합되게 해준다. 따라서 투자율이 상승하고 經濟成長速度가 빠르다. 1978년부터 1996년까지 國家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9.6%에 달하는데 이는 OECD 24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2.47%의 4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中國의 거대한 인구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經濟發展은 세계적인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표 V-7>참조)

경제의 高度成長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였다. 中國의 1인당 실질 GNP는 1978년부터 1996년까지 연평균 8.3% 증가하여 3.4배로 늘어났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2000년까지 4배로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V-7 >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구분	단위	1994	1995	1996
GDP성장률	%	11.8	10.5	9.6
CPI상승률	%	24.1	17.1	8.3
일인당GDP	%	11.4	9.3	8.4
GNP	%	12.6	9.0	9.8

자료: [中國統計年鑑] 참조.

둘째, 中國의 市場價格의 전환은 시장으로 하여금 總需要와 總供給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식량 등 不足品の 유효공급을 크게 증가하고 구조적 需

65)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1992.1 PP46 韓國對外經濟研究員.

給矛盾을 완화하며, 管理를 강화하여 生産과 경영의 원가를 낮추고 生産과 유통절차의 物價上昇요인을 억제한다. 따라서 價格改革 메커니즘을 완비해 나가기 위하여 價格調節基金의 제도적 건설을 강화하고 價格法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管理政策을 채택하여 물가상승폭을 뚜렷이 하락시켜 우선 物價上昇率이 經濟成長率보다 낮도록 管理하였다. 주민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994년 24.1%에서 1997년 2.8% 하락하였다.

세째, 中國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아시아의 NIES를 대신하여 美國, 日本 등 선진국시장에서 저가 공산품을 공급하는 주요 生産기지로 변화였다. 中國의 대외무역이 國內總生産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는 1985년에 23% 수준에서 90년에는 30%, 95년에는 48%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95년과 96년에는 인민폐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의존도는 여전히 35%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經濟規模가 큰 대국으로서 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아래의 표를 통하여 볼수 있는바와 같이 1978년 수출입총액은 355억 원이며 1996년 수출입총액은 24133.8억 원으로서 연평균 16.1%씩 증가해 中國은 世界 제11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⁶⁶⁾. 1996년 中國은 經常收支가 1139.4억 원 으로서 黑字를 거두었다.

<표-8> 수출입총액과 대외채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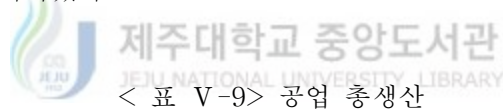
	1978	1986	1992	1993	1994	1995	1996
수출입총액	355.0	2580.4	9119.6	11271.0	20381.9	23499.9	24133.8
대외채무		693.21	835.73	928.06	1065.90	1162.75	1309.60
경상수지	10.17						1139.4

자료: [中國統計年鑑] 참조, 필자재구성

넷째, 經濟改革以後 中國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非國有部門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반면 국유부분의 성장이 부진했는데 이는 경제의 소

66) 韓洪錫 [강택민 시대의 중국] PP 55.참조

유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예를 들면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에 中國工業의 총생산액은 5154억원으로부터 91894억원으로써 17.82배 증가했는데 그중 국유공업 생산액은 3916억원으로부터 31220억원으로써 7.97배, 집체공업 생산액은 1213억원으로부터 33623억원으로써 27.71배, 사영기업생산액은 1억원으로부터 11821억원으로써 11821배, 외국 합자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혼합 소유제 기업은 24억원으로부터 15231억원으로써 634.62배나 증가했다. 1978년에 국유기업은 공업 總生産額의 77.6%를 차지했는데 1996년에는 국유기업의 비중이 이미 28.5%로 하락했다. 이는 개혁과정에서 中國의 소유구조가 國營企業을 중심으로 하던 統制經濟體制에서 탈피하여 여러 형태가 공존하면서 非國有企業이 주도하는 市場經濟體制로 점차 변하고 있다.(<표 V-9>참조) 반면 도시집단소유제 비중이 22.3%로부터 39.3%까지 상승하고 사영기업이 없던데로부터 15.4%까지 상승하면서 국유기업의 生産額을 크게 초과하였다.



< 표 V-9> 공업 총생산

단위: 억원

연도	공업총생산	공업총생산			
		국유공업	집체공업	사영기업	기타공업
1978	4237	3289	948		
1980	5154	3916	1213	1	24
1995	91894	31220	33623	11821	15231
1996	99595	28361	39232	15420	16582

자료: [中國統計年鑑] 참조.

다섯째, 中國의 시장가격의 형성은 개인 금융생산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통계에 의하면 1997년 주민 저축액은 46279.80억원으로서 1978년 210.60억원에 비하여 평균 32.86% 증가하였다. 매년 당 저축액은 1978년의 21.88원으로부터 1997년에는 3762.36원으로서 매년평균 50.15% 상승하였다.

이것은 中國 민간자금시장의 발전속도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中國은 인민폐의 환율이 수차례 조정되어 수출입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특히 수출의 경우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의 8.6%에서 1997년에는 36.1%로 상승하였다. 달러 보유고도 1979년의 8.40억원으로부터 1997년에는 1398.9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표 V-10 > 주민 저축액과 외화준비

項目\年度	1978	1980	1985	1990	1995	1997
주민저축액(億元)	210.6	399.5	1622.6	7034.2	29662.3	46279.8
일인당저축액(元)	21.88	40.47	153.29	615.24	2448.98	3762.36
외화준비(億美元)		-12.96	26.44	110.93	735.97	1398.90
황금준비(万盎司)		1280	1267	1267	1267	1267
환율(1.00美元)			3.20	4.78	8.35	8.29

자료: [中國統計年鑑]참조, 필자 재구성.



VI. 結 論

지금까지 분석된 中國 價格改革의 주요 목표는 中央 計劃당국에 의해 決定되는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價格改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中國의 價格自由化는 速度나 範圍에 있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크게 4단계를 거쳐왔다. 제1단계는 1978년에서 1984년까지의 初期 價格自由化 단계이며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매개수단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채택되었다. 제2단계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雙軌價制를 도입하여 生産財의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던 시기이다. 제3단계는 1989년 하반기부터 1992년의 상반기까지로 제2단계 價格改革의 추진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價格改革을 준비하던 시기이다. 제4단계는 199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1996년)의 시기로 價格自由化를 광범위하게 추진하여 農產品, 消費材, 生産財 등 대부분의 生産製品에 적용되던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킨 기간이다.

둘째, 價格自由化의 단계에 따라 價格自由化 대상 품목도 차별적으로 분류되었다. 價格改革 초기에는 市場需要에 민감하고 經濟 전반에 대한 영향이 적은 제품부터 價格을 자유화시키기 시작하여 社會主義 計劃經濟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生産財와 같은 제품으로 價格自由化를 확대해 나갔다.

셋째, 價格自由化 과정에 사용된 價格改革의 수단들이 다양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매개수단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농산물의 價格自由化 과정에 동원된 가격기제는 價格의 종류별로 볼 때 초과수매에 대한 割增價格, 協議收買價格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超過收買, 協議收買, 豫約收買 등의 수매방식들이 동원되었다. 일반 工產品에 대해서는 固定價格, 不同價格, 協商價格, 市場價

格 등이 활용되었으며 주요 生産財와 관련해서는 雙軌制라는 中國 특유의 政策手段이 이용되었다.

中國의 價格改革에 대한 분석 내용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農産物 價格改革은 流通體制의 미비, 지역간 수급조절 기능의 부재 등 中國農業의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價格自由化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산물의 價格自由化는 1993년에 87.5%에 이르는 등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현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統一收買에서 분석된 80년대의 農産物 價格自由化 과정은 農産物 가격자유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미비, 農産物 運送 體制의 낙후, 農工間 協商價格差의 확대 등 中國의 農業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농산물 가격자유화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파악되었다. 80년대 말까지는 농업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자유화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行政命令과 같은 計劃經濟 하에서 동원되던 政策手段으로의 후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의 농산물 價格자유화 추진이후에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經濟적 政策 수단이 이용되거나 中國 農業의 제약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된 政策들이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工産品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 과정은 中國의 價格改革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었다. 生産財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에 사용된 方法은 雙軌制의 채택이었다. 雙軌制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는 동일제품에 計劃價格과 市場價格을 동시에 공존시킴으로써 生産財의 計劃價格을 市場價格으로 전환시키는 데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計劃價格의 決定당국은 市場價格의 정보를 이용하여 生産財의 計劃價格을 상향 調整함으로써 計劃價格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에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음은 市場價格과 計劃價格을 공존시킴으

로써 기업의 市場機構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雙軌制의 활용결과 生産財의 市場價格 전환에 현저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2년에 이르러 計劃內外 生産財 제품의 價格上昇率이 거의 같은 수준에 접근함으로써 計劃經濟 하에서 과소평가 되어 있던 生産財의 計劃價格이 수요공급에 의해 決定되는 市場價格수준으로 제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대부분의 生産財 價格이 市場價格에 의해 決定되는 방향으로 價格管理體制改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生産財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초과수요와 流通市場의 무질서에 의하여 價格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일시적으로 生産財의 가격자유화를 제약하는 要因으로도 작용하였지만 상한가격제의 실시와 緊縮經濟 政策의 추진 등을 통해 부작용이 해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市場價格 수준으로 計劃價格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되어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價格改革의 과정은 80년대는 國家固定價格, 國家指導價格, 市場價格이 國家固定價格을 中心으로 하여 공존하는 시기였으며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市場價格이 價格 決定에 있어서 中心적인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80년대는 計劃經濟하에서 누적된 計劃價格의 모순을 단계적인 가격자유화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시기였으며 90년대는 이러한 價格改革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완전히 市場價格體制로 전환하는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4) 90년대에 추진된 價格자유화 성과를 商品별로 보면 1993년의 경우 市場價格 決定 비중은 農副產品 87.5%, 소매상품 93.8%, 生産財 81.1%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市場價格 도입을 中心 내용으로 하는 價格管理體制 改革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計劃價格이 市場價格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中國의 計劃經濟가 所有制

영역을 제외하고는 市場經濟로 전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計劃價格의 市場價格 전환을 經濟改革의 성과를 통하여 한층 더 논증하였다. 즉 中國의 실물경제지표 분석을 통하여 보면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9.8%에 달하여 경제의 고도 성장을 가져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中國에 있어서 價格改革이 각 부문의 經濟改革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要因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經濟改革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다.



參考文獻

1. 中國 與 韓國 文獻

1. 賈克誠, 1988, [中國社會主義價格問題],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 賈秀岩, 1982, [價格理論與實踐], 第2期
3. 賈秀岩, 1984, “實現物價改革的幾個理論問題”, [天津 社會科學], 第5期.
4. 賈秀岩, 1991, “把握好再次出現的價格改革時機”, [價格理論與實踐], 第2期.
5. 賈秀岩, 1984, “確立實現我國物價戰略目標的幾個理論問題”, [價格輯刊], 第2期.
6. 賈秀岩, 1984, [價格學原理],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7. 賈秀岩. 姚林, 1985, “論我國價格的目標模式及實現途徑” [成本與價格材料 “第20期].
8. 賈岩鎖, 1985 “關於價格的幾個理論與實踐問題”, [成本與價格資料], 第9期.
9. 經濟研究經濟學動態 編輯部 編, 1981, [建國以來政治經濟學重要問題爭論],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0. 桂世鏞, 1987, [論中國宏觀經濟管理],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11. 高景良, 1989, “我國價格補貼的矛盾與對策” [經濟科學], 第6期.
12. 高 翔, 1984, “農產品價格形成的基礎”, [財政經濟], 第5期.
13. 高 翔, 1982, [論物價改革],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 高常全, 1987, [9年來的中國經濟體制改革], 北京: 人民出版社.
15. 谷書堂, 1987, [中國計劃體制改革探討],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6. 喬榮章, 1986, “對我國生產資料價格改革的探討”, [成本與價格資料], 第8期.
17. 喬榮章, 1990, “我國的價格補貼政策”, [中國物價], 第6期.
18. 國家計劃委員會經濟豫測中心, 國家統計局國民經濟平衡統計司 編, 1986, [全國投入產出表(1981)], 中國統計出版社.

19. 國家物價局物價研究所課題組, 1988, “價格改革中期目標研究”, [改革], 第3期.
20. 國家物價局物價研究所課題組, 1989, “10年價格改革”, [國民經濟計劃與管理].
21. 國家統計局國民經濟平衡統計司, 國家統計局投入產出辦公室, 1993, [中國投入產出表(1990)], 中國統計出版社.
22. 國家統計局國民經濟平衡統計司, 全國投入產出辦公室, 1988, [中國投入產出表(1987)], 中國統計出版社.
23. 國家統計局投入產出辦公室, [1987年全國投入產出調查培訓教材], 中國統計出版社.
24. 國家統計局 編, [中國物價統計年鑑], 各年號, 中國統計出版社.
25. 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鑑], 各年號, 中國統計出版社.
26. 戴園晨, 1990, “不失時機地促進價格改革”, [改革], 第4期.
27. 薛暮橋, 1991, “管理貨幣, 放開物價” [價格理論與實踐], 第1期
28. 吳家駿, 1984, [11屆3中全會以來經濟建設方針政策], 北京: 人民出版社.
29. 王振之. 喬榮章, 1988, [中國價格改革的回顧與展望], 北京: 中國物資出版社.
30. 王振之 外, 1986, “價格改革的若干理論問題”, [價格理論與實踐] 第6期.
31. 姚今觀, 1990, “也談生產資料價格雙軌制立軌問題”, [中國物價], 第3期.
32. 張卓元, 1989, “10年價格改革最主要的經驗與教訓”, [國民經濟計劃與管理], 9.
33. 中國改革與發展報告專家組, 1994, [中國改革與發展報告], 中國財政經濟出版社.
34. 中國經濟體制研究會, 1984, [經濟體制改革若干理論問題], 福建人民出版社.
35. 中國共產黨 第12屆3中全會, 1984, “中共中央關與經濟體制改革的決定”, [紅旗], 24期.

36. 中國國家統計局, 1987, [中國勞動工資統計資料(1949-1985),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37. 中國物價年鑑編輯部, [中國物價年鑑], 各年號, 中國物價出版社.
38. 中國社會科學院價格改革課題組, 1987, “價格: 進一步改革的問題與思路” [成本與價格資料], 第1期.
39.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發展室, 1987, [中國的經濟體制改革],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40. 中國社會科學院財貿所‘價格改革’課題組, 1990, “生產資料價格‘雙軌制’向何處去(待續)”, [中國物價], 第10期.
41. 胡昌暖, 1990, “我國價格形成機制的目標模式”, [中國物價], 第6期.
42. 李經文, 1996, “快速發展中的中國經濟”, [熱點 對策. 展望],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43. 吳敬璉, 王育昆, 1991, “價格制度和經濟效率的關係及價格體制改革”
44. 칼 마르크스, 1989, [자본론 I (상, 하)]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45. 칼 마르크스, 1989, [자본론 II]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46. 칼 마르크스, 1989, [자본론 III-1] 강신준 역, 서울: 이론과 실천.
47. 고정식, 1991, [중국의 계획가격과 산정방식] 산업연구원.
48. 한홍석, 1997, 3 [강택민 시대의 중국] LG경제연구원.
49.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1 [중국공업경제효율과 공업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50.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4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
51. 증벽균. 임목서, 1993, 9 [중국현대경제사]: 매일경제신문사

2. 日本語 文獻

1. 山内一男, [現代中國の 經濟改革], 東京: 學陽書房, 1988
2. 演勝彦, [鄧小平時代の 中國經濟], 東京: 亞紀書房, 1981
3. 上原一慶, [中國の經濟改革と開放政策], 東京: 青木書店, 1987
4. 石原享一, 1985, “計劃化と價格” 丸山神郎 編, [轉機に立つ中國經濟], アジア經濟 研究所.
5. 石原享一, 1986, “中國の價格改革と商品經濟” [アジア經濟], 27-8
6. 石原享一, 1991, “中國經濟構造の多重化,” 石原享一 編, [中國經濟の多重構造], アジア 經濟研究所.
7. 李潔, 1986, “中國農業關聯票による價格體系分析” [立命館經濟學]. 第38卷 2號
8. 日本經濟協會. [中國の企業管理制度とその改革の課題], 東京: 日中經濟協會, 1983
9. 日本經濟協會, [中國の經濟體制改革の動向], 東京: 日中經濟協會, 1986
10. 日中經濟協會, [中國の經濟計劃原理], 東京: 日中經濟協會, 1989
11. 日中經濟協會, [中國の 企業改革], 東京: 日中經濟協會, 1984
12. 日中經濟協會, [中國の財政, 金融及び稅制], 東京: 日中經濟協會, 1985
13. 中嶋誠一, 1992, “中國における價格の現狀(1, 2, 3)” [中國經濟], 12

Abstract

A Study of the Reform of the Price System After the Economic Reform in China

XI-SHU ZHE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inese economic reform began in 1978 with the adoption of a market economy.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adopting a market economy depends on the level of substitution of planned price for market price.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process from planned price to market price, and to evaluate the achievement of economic reform in China in terms of the price system.

This dissertation is composed of 6 chapters. Chapter I deals with the purpose and the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II refers the methods and the problems of the price reform. Chapter III explains the process of reform of the price system, especially in regard to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modities. Chapter IV explains the promoting process of the price reform. Chapter V analyzes the success of the reform of the price system. And Chapter VI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re follows:

1) The reform of the price system in agricultural commodities is analyzed in terms of the process of the maximization of the

adoption of free market price under such constraints as an insufficient wholesale market, a backward transportation system, and so on in China.

The free price in agricultural commodities has shown prominent success in the 1990s. For example, the free price was reached 87.5% in 1993. But it is needed to improve several restrictions to limit

agricultural industry in China such as a defect of a wholesale market of agricultural products, a backward transport system of it, and a deep margin of cooperative price in agricultural and industrial commodities to settle the free pric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2) The method to use for turnover of market price in industrial planned price is adopting a dual price system. The main role of the dual price system is confirmed as follows: the one is that the dual price system applied on industrial commodities takes on the role of criterion. The planned price is led toward the level of market price.

The administration adjusts the level of the planned price upward by using information about market price, and prepares the stepping stone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from planned price to market price. The other is that a dual price system provides a state-owned company with the opportunity of adaptation to market mechanisms through planned price and market price.

3) The level of substitution of the planned price for the market price is 79.0% for agricultural goods, 92.5% for consumer goods, and 81.8% for industrial commodities in 1996. These mean the transition from planned price to market price according to promoting a reform against the price system under government control. The main content is an import of market price.

We can see the economic success of China in the analysis of object-economy. That is, the average annual GDP growth rate is

reached 9.8% and the GNP per a person increased 8.4% in the yearly mean from 1978 till 1997. These are showned the world miracle in the terms of an economic growth.



국 문 초 록

중국은 1978년이래 시장경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시장경제 도입의 성과는 시장가격이 계획가격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대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에 있어서 계획가격의 시장가격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시장경제 도입을 위주로 하여 추진된 경제개혁의 성과를 가격개혁 측면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가격개혁의 방법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공산품 가격개혁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쌍궤제 가격개혁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격관리체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분석 하였다. 제6장에서는 각 장별로 분석된 가격개혁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이후 가격제도개혁에 대한 본 논문의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산품 가격개혁은 유통체제의 미비, 지역간 수급조절 기능의 부재 등 중국농업의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가격자유화 정도를 극대화 시켜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농산물의 가격자유화는 1993년에 87.5% 수준에 이르는 등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현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의 자유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미비, 농산물 운송체제의 낙후, 농공간 협상가격차의 심화 등 중국의 농업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2) 공산품 계획가격의 시장가격 전환에 사용된 방법은 쌍궤제의 채택이었다. 쌍궤제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는 동일제품에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동시에 공존시킴으로써 생산재의 계획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전환시키는 데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획가격의 결정 당국은 시장가격의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재의 계획가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계획가격의 시장가격으로의 전환에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다른 하나는 시장가격과 계획가격을 공존시킴으로써 기업의 시장기구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3) 시장가격 도입의 성과를 상품별 시장가격 결정 비중 측면에서 보면 1996년의 경우 농부산물 79.0%, 소비제품 92.5%, 생산재 81.1%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장가격 도입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가격관리체제 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계획가격이 시장가격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은 9.8%에 달하고 1인당 GNP는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하여 그 경제발전은 세계적인 기적을 이루었다.

